

통 상 법 률

목 차

2022년 제1호 (통권 제154호)

◆ 논 단

1.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송 준 현 / 3

◆ 연구노트

1. 최근 정부의 기업 규제 관련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alism)
- 법과 발전학(law and development) 및 국제경제법 관점에서의 제언 -
..... 박 태 정 / 43

◆ 해외동향

1.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최승은·공보영 / 55
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임 세 영 / 68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동경국제대학 상학부 교수 송 준 헌

*논문접수 : 2022. 1. 24. *심사개시 : 2022. 2. 7. *게재확정 : 2022. 2. 17.

〈 목 차 〉

I. 서론	4. 수출허가
II. 수출통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5. 자율준수
1. 수출통제제도의 형성	6. 처벌규정
2. 수출통제제도의 변화	IV.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III. 수출통제제도의 검토	1. 수출규제조치의 단계별 내용
1. 관련법령	2. 수출규제조치의 법적 쟁점
2. 담당기관	V. 결론
3. 수출통제	

I. 서론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수출통제 (export control)¹⁾와 관련한 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하였다.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허가를 포괄 허가에서 개별허가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수출지역 구분을 기존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가)에서 새롭게 설정된 하위 그룹으로 격하시키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의 이유로서 수출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호소를 인정하여 일본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한

1) 일본에서는 ‘안전보장무역관리’ 또는 ‘수출관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 등의 고유 명칭을 제외하고 수출통제로 표기하였다.

판결에 불만을 갖고 사실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²⁾.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규제조치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해 우방국을 압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김양희(2019)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반한협한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안보상의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재를 수출규제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에 적합하고 한국의 비대칭적인 대일본 의존성을 상징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³⁾.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를 강행한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조치가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우방국을 상대로 자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국제통상 분야에서 수출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수출통제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해를 가저올 수 있는 전략물자 또는 그에 준하는 물자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출품이나 기술 등이 테러, 군용 등 우려 용도로 사용되거나 우려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정부의 수출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이다⁴⁾. 여기에서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한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는 1949년에 미국의 주도로 결성된 對公산권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국제안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수출통제는 핵공급

2) 김양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의 ‘탈일본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일본비평』, 제24호, 2021, p.26.

3) 김양희,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과 정책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11-14.

4)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총람: 1권. 국제 수출통제 및 우리나라 제도』, 전략물자관리원, 2021, p.14.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 WA)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제레짐에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수출통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일본의 수출통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 홈페이지를 보면, ‘무기나 군사전용이 가능한 화물과 기술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 우려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수출관리레짐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수출 등의 관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 또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출통제 지원 활동을 추진하며 해당 지역에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1993년부터 매년 아시아 수출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의 강화와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계기로 해당 사례를 분석하거나 일본의 법령을 조사한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지만,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은 물론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하였는지를 자세히 분석한 연구는 아쉽게도 부족한 상태이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통제는 WTO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⁶⁾, 국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조치의 강약을 조절하여 발동하기에도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수출통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변화되었는지 고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본 수출통제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화물, 기술, 중개무

5) <https://www.meti.go.jp/policy/anpo/gaiyou.html>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6)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에서는 안보상의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역, 환적이 대상이지만, 지면 관계상 화물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조치의 내용을 단계별로 검토하고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수출통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1. 수출통제제도의 형성

일본의 수출통제 기본법인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이하 ‘외환법’으로 표기)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이라는 명칭으로 1949년 12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초기 외환법의 기조는 수출관리는 최소화하는 반면에 수입관리는 엄격하게 실시하여 무역흑자를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수출자유 및 수입승인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였다⁷⁾. 전쟁에서 패망한 직후 국가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대외무역은 물론 외환결제까지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후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대외무역을 자유화하고 최소한의 관리와 조정만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1979년 12월에 외환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외환법이 재차 개정되면서 대외무역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고, 법률의 명칭에서도 ‘관리’라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⁸⁾. 외환법 제1조에서는 대외거래를 필요 최소한으로 관리 또는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수출자유 원칙에 따라서 수출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한만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1952년 COCOM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⁹⁾. COCOM은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1949년에 설립된 비공식 국제기구이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6개 국가에 의해서 1950년 1월에 발효되었다¹⁰⁾. 본래

7) 田村博道·森本正崇, 『輸出管理論: 国際安全保障に対応するリスク管理・コンプライアンス』, 信山社, 2008, p.66.

8) 浜谷源蔵, 『最新貿易実務』, 同文館出版, 2003, p.25.

9) Hisashi Riko, “Export Control in Japan and CISTEC,” in Dai Tamada and Philippe Achilleas(eds.), *Theory and Practice of Export Control: 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pringer, 2017, p.43.

10) 이후 참여국은 17개 국가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참여국이 아닌 협력국의 일원으로서 1987년 미국과의 양허각서 체결을 통해 법령을 개정하고 COCOM에 준하는 수출통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COCOM은 국제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신사협정이었기 때문에 통제 품목과 국가를 정하여 참여국들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국제안보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라서 통제대상 물품과 기술이 변화하였다. 일본은 1949년에 제정된 외환법과 수출무역관리령에 COCOM에서의 합의를 반영하여 공산권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후 COCOM은 1994년에 해체될 때까지 일본 수출통제제도의 근간이 되었다¹¹⁾.

한편,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987년에 발각된 도시바 기계(현 시바우라 기계)의 COCOM 위반사건은 일본의 수출통제체제가 강화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¹²⁾. 일본의 도시바 기계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성능 공작기계 8대를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노르웨이를 경유하여 비밀리에 소련으로 수출하여 법령을 위반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고성능 공작기계는 소련으로 유출되어 소련의 잠수함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미국 해군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¹³⁾. 결국 일본 정부는 1987년 9월 법령을 개정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크게 강화하였으며¹⁴⁾, 동년 11월에는 수출통제의 운용 지침을 담은 통달(通達)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도시바 기계의 COCOM 위반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COCOM의 통제대상 물품 및 기술을 정령(政令)의 별표에 규정하고 특정지역¹⁵⁾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명문화하였다. 본래 외환법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지역에 관계없이 수출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작기계 부정수출 사건을 계기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 하에 수출허가로 전환되었다¹⁶⁾.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와

11) 佐藤丙午, “核不拡散と日本の安全保障,” 『海外事情』, 第55号, 2007, p.41.

12) Riko, 앞의 글, p.43.

13) Bates Gill, Kensuke Ebata, and Matthew Stephenson, “Japan’s Export Control Initiatives: Meeting New Nonproliferation Challeng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4, 1996, p.34.

14) 戦略物資輸出管理研究会(編), 通産省戦略物資輸出検査官室(監修), 『<新訂版>戦略物資輸出管理マニュアル』, 商事法務研究会, 1989, p.1.

15)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불가리아,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북한,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베트남.

별칙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기업들은 수출 관리 사내규정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당시 경제산업성은 약 150개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산하기업의 사내 수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¹⁷⁾.

이처럼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COCOM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지만,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비확산형 수출관리가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수출관리체제에서 합의된 내용을 외환법 등에 반영하면서 수출통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일본은 NSG(1974년), AG(1985년), MTCR(1987년) 등에 설립 초기부터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수출관리체제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법령에 반영하여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⁸⁾. 아울러,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는 방침 아래 ‘무기수출 3원칙’¹⁹⁾에 따라서 수출무역관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의 해외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무기수출 3원칙은 도쿄대학이 개발한 로켓이 인도네시아와 유고슬로비아에 수출되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1967년 4월 사토(佐藤) 총리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표명하였으며, 이후 1976년 2월 미키(三木) 내각에서 일본 정부의 통일 견해로 정해졌다²⁰⁾. 이로 인하여 일본의 무기 및 무기개발 관련 기술의 수출 및 이전이 사실상 금지되었다²¹⁾.

2. 수출통제제도의 변화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국제안보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냉전시기에 형성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도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 우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진영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운용되었던 COCOM도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94년 3월 31일 COCOM

16) 田村博道·森本正崇, 앞의 책, p.69.

17) 戦略物資輸出管理研究会(編), 앞의 책, p.5.

18) 経済産業省安全保障貿易管理課, “日本の安全保障貿易管理について: 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と改正について,” 『配管技術』, 第47巻, 第10号, 2005, p.34.

19) 무기수출 3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3원칙 대상지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 둘째, 3원칙 대상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헌법과 외환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무기 수출을 자제한다. 셋째, 무기제조관련 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

20) 大川幸雄, “我が国の武器輸出管理政策の変遷: 武器輸出三原則等の緩和と防衛産業の消極性,” 『月刊JADI』, 第828号, 2016, pp.4-5.

21) 沓脱和人, “武器輸出三原則等の見直しと新たな防衛装備移転三原則,” 『立法と調査』, 第361号, 2015, p.55.

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1996년 7월 재래식 무기의 확산과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수출통제체제인 WA가 발족하였다. 본래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은 COCOM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리스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나, 1996년 9월부터는 WA의 합의에 따라 별표 제1의 1항 및 5항부터 15항까지에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리스트 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²²⁾.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다.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레짐이 COCOM에서 WA로 이전됨에 따라서 외환법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었다. 이전에는 수출통제 대상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지만, WA체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지역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최종 수요자와 용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려가 있는 수출에 대해서만 통제하는 비확산형 수출관리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²³⁾. 이러한 비확산형 수출관리는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일본은 국제수출통제제도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고자 1991년 10월에 수

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별표 제1에서 리스트 통제의 대상품목을 지금처럼 1항부터 15항에 분류하였으며, 1993년 6월에 정령을 개정하면서 3의 2항(생물 무기)을 추가하였다.

한편, 걸프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라크의 핵시설을 사찰한 결과, 범용성이 넓고 민수용으로 사용되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이 핵무기의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하려는 물품이 민수용이더라도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캐치올 통제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캐치올 통제의 도입에 앞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보완적 수출규제를 1996년 10월에 도입하였다²⁴⁾. 보완적 수출규제의 대상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에 규정되었으며, 주로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이 가능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한 리스트 통제 대상의 스펙다운 품목들이었다.

22) 石川雅啓, “韓國の安全保障貿易管理制度とそれに係わる企業支援体制の考察,” 『アジア市場経済学会年報』, 第15巻, 2012, p.53.

23) 田村博道·森本正崇, 앞의 책, pp.69-70.

24) 天野正固, “我が国の安全保障輸出管理制度,” 『月刊JADI』, 第603号, 1997, pp.32-33.

이후 일본의 보완적 수출규제는 2002년 4월에 거의 모든 품목들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하는 캐치올 통제의 도입으로 대체되었다. 당시 일본의 보완적 수출규제 대상은 리스트 통제의 스펙다운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스트 통제에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어 다른 국가에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제도의 미비로 수출통제가 불가능한 사태가 우려되었던 것이다²⁵⁾. 수출통제는 각국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완적 수출규제만으로는 일본이 국제수출통제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결국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일본도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였다²⁶⁾.

캐치올 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의 수출통제는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용 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²⁷⁾.

橫山(2013)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캐치올 통제가 도입된 2002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발생한 경제산업성의 통지 건수가 112건에 이르며, 실제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 안정화 전원장치나 인버터 등이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²⁸⁾. 또한, 경제산업성이 외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건수도 캐치올 통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²⁹⁾. 대외적으로는 우회무역을 통한 수출통제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통제제도의 정비 지원(아웃리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³⁰⁾.

아울러, 2003년 12월 WA 총회에서는 국제연합(UN)이 정한 무기금수국 등을 대상으로 리스트 통제 대상 이외의 이중용도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도 2008년 11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였다. 리스트 통제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및 재

25) 田村博道·森本正崇, 앞의 책, p.71.

26) 石川雅啓, “韓國の安全保障貿易管理制度とそれに係わる企業支援体制の考察,” 『アジア市場経済学会年報』, 第15巻, 2012, p.54.

27) 経済産業省安全保障貿易管理課, 앞의 글, p.39.

28) 横山恭三, 『我が国の産業競争力の低下及び安全保障上の脅威につながる技術情報流出の実態と対応策について』, 防衛基盤整備協会, 2013, p.71.

29) 経済産業省安全保障貿易管理課, 앞의 글, p.39.

30) 貿易経済協力局安全保障貿易管理課, “安全保障貿易管理の最近の取り組みについて,” 『経済産業ジャーナル』, 第38巻, 第2号, 2005, p.18.

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가 도입되면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수출허가의 필요성이 정령과 성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리스트 통제와는 달리, 캐치올 통제는 수출허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수출업자가 일차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도시바 기계의 COCOM 위반 사례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들에게 매우 엄격한 사내관리체제를 요구하여 왔는데, 캐치올 통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³¹⁾.

수출통제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방침은 2000년대에 들어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설명한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83년 1월 나카소네(中曽根) 내각에서 처음으로 예외가 인정된 이후, 해당 원칙이 폐지되는 2014년 이전까지 모두 21건의 예외조치가 이루어졌다³²⁾. 특히, 2004년 고이즈미(小泉) 내각에서 무기수출의 검토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2011년에는 당시 민주당 정권인 노다(野田) 내각에서 무기수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결국, 2014년 4월 아베(安倍)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는 대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결정하게 된

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3원칙은 ①방위장비이전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②방위장비이전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며, ③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제3국으로의 이전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3원칙이 결정된 직후인 2014년 7월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2)의 부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이후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은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무기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³³⁾.

III. 수출통제제도의 검토

1. 관련법령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법령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법령은 헌법과 국회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법률,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이 제정하는 정령(政令), 각 정부부처의 대신(장관)이 정하는 성령(省令), 그리고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告示) 등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상급기

31) 佐藤丙午, 앞의 글, p.43.

32) 大川幸雄, 앞의 글, p.5.

33) 沓脱和人, 앞의 글, p.65.

관이 하급기관에게 법령의 해석이나 운용 방침 등을 지시하는 통달(通達),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항을 알리는 통지(通知), 그리고 법령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수출통제의 법령 체계도 기본적으로 법률, 정령, 성령, 고시, 그리고 통달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외환법에서 수출통제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외환법은 대외무역을 관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한국의 대외무역법에 해당한다. 외환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특정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종류의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³⁴⁾. 외환법상 대외무역은 원칙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정령으로 규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법의 정령으로 제정된 『수출무역관리령』과 『외국환령』에서는 각각 화물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의 개요, 통제품목, 통제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무역관

리령의 별표 제1 및 외국환령의 별표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수출허가가 요구되는 물품 및 기술을 정해 놓고 있으며,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에서는 소위 백색국가를 정하고 있다. 다만 수출무역관리령에서는 품목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통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상세한 사양은 경제산업성령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및 외국환령 별표에 근거한 화물 또는 기술을 정하는 성령』(이하 ‘화물 성령’으로 표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무역관리규칙』과 『무역 관계 무역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에서는 수출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의 세부사양 그리고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는 다수의 성령, 고시, 통달 등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통달인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이하 ‘운용 통달’로 표기)과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수출통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운용지침을 정하고 있다. 통달은 법령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구속력을 갖는데, 2019년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도 운용 통달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국제수출관리체제에서의 합의에 따

34) 마찬가지로 외환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기술의 수출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다.

라서 추가, 변경, 삭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기 정령과 성령 등은 국제수출관리체제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다³⁵⁾.

2. 담당기관

외환법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³⁶⁾은 일본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내에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안전보장무역관리정책과, 안전보장무역관리과, 안전보장무역심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재무성 산하의 전국 9개 세관이 경제산업대신의 지시에 따라서 외환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출허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산업성의 수출관리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며 일본의 수출통제 업무는 경제산업성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세관은 관세법 제70조에 따라서 통관시 수출허가의 취득 여부를 확인하며, 경제산업성은 외환법 제

54조에 따라서 세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분산되어 있는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의 수립과 이행 그리고 이용자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³⁷⁾.

한편, 일본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enter for Information on Security Trade Control; CISTEC)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ISTEC는 1987년 도시바 기계의 COCOM 위반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제산업성 주도로 1989년 4월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2020년 3월 31일 현재 525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³⁸⁾. CISTEC는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산·학·관 연계채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수출통제관리’를 실현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수출통제에 관한 홍보, 연구조사, 기업지원, 교육, 인력양성³⁹⁾, 정책제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무성과

35) 森本正崇, “輸出管理の概要4-リスト規制②,” 『貿易と関税』, 第64巻, 第7号, 2016, p.35.

36) 2001년 1월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통상산업성이 경제산업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경제산업성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37)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총람: 2권. 주요국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 2020, p.135.

38) <https://www.cistec.or.jp/about/cistec/johokokaisiryō/3-jigyōhoukoku.pdf> (검색일: 2021년 1월 3일)

39) CISTEC는 기업의 수출관리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실무능력을 제고하고자 안전보장수출관리실무능력

경제산업성의 지원 아래 아시아수출관리 세미나를 199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 수출허가가 필요한 ‘캐치올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3. 수출통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지만, 수출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제산업대신의 수출허가가 요구되는 ‘리스트 통제’와 특정요건 및 상황에 따라

가. 리스트 통제(List control)

우선 리스트 통제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항부터 15항까지 열거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 상관없이 반드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

<표 1>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개요

항	분류		주요 물품	비고
1	무기		총포,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군용선박 등	WA, 3원칙
2	대량 살상 무기	원자력	방사성 물질, 원자로, 중수소, 재처리 플랜트 등	NSG
3		화학무기	화학무기의 원료물질, 제조설비, 검침장치 등	AG, CWC
3의 2		생물무기	생물무기의 원료가 되는 미생물, 제조장치 등	AG, BWC
4		미사일	로켓, 무인항공기, 관련 기자재 등	MTCR
5	재래식 무기	첨단재료	폴리이미드, 니켈 합금, 탄소섬유 등	WA
6		재료가공	공작기계, 로봇 등	
7		전자	집적회로, 반도체 소자 및 기반, 레지스터 등	
8		컴퓨터	컴퓨터, 전자계산기 등	
9		통신기기	전송 통신장치, 전자식 교환장치 등	
10		센서	음파수중탐지장치, 광 검출기, 레이더 등	
11		항법장치	가속도계, 자이로코프, 관성항법장치 등	
12		해양관련기기	잠수정, 수중용 로봇, 수중용 카메라 등	
13		추진장치	인공위성, 가스터빈엔진, 로켓 추진장치 등	
14		기타 범용품	화약 등의 군수품(1항 해당품목 제외)	
15		민감품목	음파수중탐지장치, 전파흡수재 등	
16	보완적 수출규제	관세정률법 별표 제25류~40류, 제54류~59류, 제63류, 제68~93류 또는 제95류에 해당 하는 화물(1~15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화물		

출처: 石川雅啓, “安全保障貿易管理,” 『国際金融』, 第1325号, 2019, p.15, 図表 2.

인정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준별로 STC Associate, STC Advanced, STC Expert/STC Legal Expert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STC란 Security Trade Control을 의미한다.

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리스트 통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대상이며, 가령 일본의 모회사가 미국의 자회사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경제산업대신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이처럼 엄격한 수출규제가 이루어지는 리스트 통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재래식 무기의 과도한 비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수출하려는 물품의 기술적 성능 및 사양에 따라서 통제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을 살펴보면, 1항에서는 총포, 탄약, 폭발물, 화약류, 군용차량, 군용선박 등 WA에서 규정한 각종 무기가 열거되어 있다. WA 참가국들은 통제 리스트상의 물품들에 대해서 자국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수출을 규제하지만, 무기수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2항부터 4항까지는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2항은 NSG의 통제대상인 원자력관련 품목, 3항은 AG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의 통제대상인 화학무기관련 품목, 3의 2항은 AG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의 통제대상인 생물무기

관련 품목, 그리고 4항은 MTCR에서 규제하고 있는 로켓과 무인항공기 등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5항부터 15항까지는 민수용이지만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WA에서 규정한 이중용도품목이 열거되어 있다.

수출하려는 품목이 리스트 통제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우선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에서 해당품목의 종류를 파악한 후, 화물 성령에서 물품과 기술의 세부 사양을 확인해야 하며, 법령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운용 통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2항 (1) 핵연료 물질 또는 핵원료 물질이란 화물 성령 제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네 가지 품목을 지칭하며, 핵연료 물질 또는 핵원료 물질에 대한 의미는 운용 통달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정령, 성령, 통달로 이어지는 리스트 통제 규정을 매트릭스 표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출허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미국의 수출통제분류번호(ECCN)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⁴⁰⁾.

나. 캐치올 통제(Catch-all control)

다음으로 캐치올 통제란 리스트 통제 대

40) https://www.meti.go.jp/policy/anpo/matrix_intro.html (검색일: 2021년 1월 10일)

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의 개발 및 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경제산업 대신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리스트 통제를 보완하기 때문에 보완적 수출통제라고도 부른다. 리스트 통제가 기본적으로 무기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하이테크 제품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캐치올 통제는 민수품일지라도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사실상 모든(all) 물품을 수출 규제의 대상으로(catch) 지정하는 제도이다⁴¹⁾.

캐치올 통제의 대상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정률법 별표 상의 제25류~제40류, 제54류~제59류, 제63류, 제68류~제93류, 그리고 제95류가 해당된다. 리스트 통제 대상품목 및 식량이나 목재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물품이 캐치올 통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리스트 통제처럼 기술적 사양에 따라서 통제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물품의 수요자와 용도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일본의 캐치올 통제는 9.11 테러를 계기로 2002년 4월에 도입된 ‘대량살상무

기 캐치올 통제’와 2008년 11월에 도입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객관 요건과 통지 요건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먼저, 대량살상무기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 통제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제산업대신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캐치올 통제의 대상지역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에서 소위 백색국가(그룹 A)로 정하고 있는 26개 국가⁴²⁾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2019년 8월에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탄소섬유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캐치올 통제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경제산업대신의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41) 經濟産業省安全保障貿易管理課, 앞의 글, p.37.

42)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표 2> 수출지역의 구분

그룹	대상국	비고
A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에 기재된 국가	백색국가
B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	한국 등
C	그룹 A, B, D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D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2에 기재된 국가(UN 무기금수국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4에 기재된 국가(이란, 이라크, 북한)	

첫 번째는 수출화물의 용도 및 수요자를 확인한 결과,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수출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경우인데, 이를 ‘객관 요건’이라고 한다. 객관 요건은 다시 ‘용도 요건’과 ‘수요자 요건’으로 구성된다. 먼저 용도 요건이란, 수출기업이 계약서나 기타 입수한 문서, 도면 등을 통해서 수출화물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경우이다. 다음으로 수요자 요건이란, 수출화물의 해외 수요자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해당물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음을 수출기업이 사전에 인지한 경우, 또는 경제산업성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관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조직들을 열거해 놓은 ‘외국 유저 리스

트⁴³⁾’에 해당 수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수출물품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제산업성이 판단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받도록 수출기업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인데, 이를 ‘통지 요건’이라고 한다.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통지받은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만 하며, 당연히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 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 경제산업대신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이다. 캐치올 통제의 대상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대량살상무기 캐치올 통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산업성은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하려는 목적지에 따라서 수출허가 신청의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먼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의 품목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

43)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1년 9월 17일 현재 이란이 222곳(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북한 144곳(24%), 중국 86곳(14%), 파키스탄 79곳(13%), 기타 69곳(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 큰 34개 품목을 UN에서 정한 무기금수 조치의 대상국⁴⁴⁾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이 판단하는 통지 요건과 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객관 요건에 따라서 수출규제가 이루어진다. 다만,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객관 요건은 용도 요건만 적용이 된다. 다음으로 캐치올 통제의 대상품목을 백색국가 및 UN 무기금수국가 이외의 국가지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통지 요건에 따라 수출규제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캐치올 통제는 매우 복잡하여 기업들이 수출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⁴⁵⁾. 수출허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손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1)우선 수출하려는 물품이 리스트 통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캐치올 통제의 대상에는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2)수출국이 백색국가일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불필요하지만, (3)백색국가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한다면 대량살상무기 캐치올 통제의 용도 요건 및 수요자 요건에 따라서 수출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며, (4)만약 UN 무기금수국가로 수출한다면 재래치무기 캐치올의 용도 요건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표 3> 캐치올 통제의 요건

대상 품목	대상지역	요건		
		통지	객관	
			용도	수요자
대량살상 무기	백색국가를 제외한 전지역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	○	○	○
재래식 무기	UN 무기금수국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2)	○	○	-
	백색국가를 제외한 전지역 (UN 무기금수조치 대상국 제외)	○	-	-

출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anpo/anpo03.html>).

4. 수출허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하려는 물품이 리스트 통제 또는 캐치올 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일본의 수출허가는 크게 개별허가와 포괄허가로 분류된다.

가. 개별허가

먼저 개별허가란 외환법 제48조, 수출무

44)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현재 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콩고 민주 공화국 등 모두 10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다.

45) 森本正崇, “輸出管理の概要5-キャッチオール規制①,” 『貿易と関税』, 第64巻, 第8号, 2016, p.74.

역관리령 제1조, 그리고 외환령 제17조에 따라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 또는 기술 등을 수출 및 이전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이처럼 일본의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허가는 계약마다 이루어지는 개별허가가 원칙이다. 하지만, 수출허가 신청건수가 급증하면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부당국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수출관리체제를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1989년에 포괄허가 제도가 도입되었다⁴⁶⁾.

나. 포괄허가

포괄허가란 수출통제 관련 법령 및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수출허가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포괄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2(UN 무기금수대상 10개국) 및 별표 제4(이란, 이라크, 북한)에 게재된 국가로 수출하거나 경유하는 경우에는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포괄허가제도는 수출하려는 국가, 사유, 품목, 수요자 등의 요건이 결합되어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 특별반품등포괄

허가, 특정자회사포괄허가의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포괄허가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에 게재되어 있는 국가(백색국가)로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2항부터 14항에 해당하는 품목 가운데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에 일괄적으로 수출허가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일반포괄허가의 대상품목은 포괄허가취급요령 별표A에 ‘일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품목인데 대부분 기밀성이 높지 않다. 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NACCS(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2019년 8월에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시 일반포괄허가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2항부터 15항에 해당하는 품목 가운데 기밀성이 낮은 품목을 백색국가를 포함한 특정 국가 및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의 대상은 포괄허가취급요령 별표A에 ‘특별일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품목이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2항부터 15항에 해당하는 품목을 외국에서 수입하였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반송하

46) 戦略物資輸出管理研究会(編), 앞의 책, p.6.

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국을 비롯하여 백색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먼저 수출관리 내부규정 및 자기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이후에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검사관실로부터 기업실사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특정포괄허가는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일 기업에게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항부터 14항에 해당하는 품목 가운데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특정포괄허가의 대상은 포괄허가취급요령 별표A에 ‘특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품목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이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당연히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요건도 충족해야만 한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2항부터 15항에 해당하는 품목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항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무기)을 불량으로 인한 반품, 수리, 사양 등이 상이하여 반송할 경우에는 특별반품등포괄허가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

입시의 성질 및 형태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외되며, 일반포괄허가와 마찬가지로 대상지역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백색국가)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특정자회사포괄허가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2항부터 14항에 해당하는 품목을 해외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특정 자회사란 수출기업이 주식의 과반수(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와 동등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기업을 말한다. 특정자회사포괄허가의 대상은 포괄허가취급요령 별표A에 ‘특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물품을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다. 수출허가의 면제

리스트 통제 및 캐치올 통제의 대상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수출무역관리령 제4조에서는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이 임시로 일본에 하역한 경우이다. 둘째, 외국 무역선이나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 항공기의 부품 및 항공기의 발착과 비행 안전에 요구되는 장비나 부품 가운데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국제기관에 송부하는 물품 가운데 국제조약에 의해

수출제한이 면제되는 경우,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송부하는 공용 물품, 무상 수출을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무상 수입을 위해 무상으로 수출할 물품으로 경제산업대신이 고시에서 정한 것이 해당된다. 셋째, 앞서 살펴본 캐치올 통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5~13항 또는 15항에서 규제하는 물품의 총가액이 1백만 엔 이하인 경우 그리고 3항의 3에서 규제하는 물품이 5만 엔 이하인 경우는 별표 4에 열거된 국가로의 수출을 제외하고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다만, 위와 같은 수출허가의 면제는 별표 제1의 1항에서 규제하는 무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자율준수

가. 준수기준

일본은 2010년 4월에 외환법을 개정하고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자는 성령에서 정하는 준수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은 외환법 제55조의 10의 규정에 따라서 『수출자 등 준수기준을 정하는 성령』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수출자 등이란 통상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등을 통해서 기술 제공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도 포함된다. 본 성령의 제1조에 따르면, 모든 수출자 등은 수출하려는 물품이 리스트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조직 내에서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도를 수행해야만 한다. 책임자 선임과 법령준수를 위한 사내 지도는 모든 수출자 등이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이다.

수출자 중에서도 특정중요화물의 수출이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더욱 엄격한 준수기준이 요구된다. 『특정중요화물 등을 정하는 성령』에 따르면, 특정중요화물이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에서 1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그리고 외국환령 별표 1에서 15까지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앞서 살펴본 리스트 통제의 대상 물품 및 기술을 의미한다. 특정중요화물을 수출하는 기업 등은 ①통괄 책임자의 선임, ②수출관리체제의 정비, ③통제품목에 대한 확인 절차의 수립, ④용도 확인 절차의 수립 및 실시, ⑤출하 확인, ⑥감사 체제의 정비와 정기적 실시, ⑦통괄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연수, ⑧문서보존, ⑨법령 위반 시 보고 및 재발 방지를 준수해야만 한다.

나. 수출관리 내부규정

경제산업성은 기업들의 수출관리 내부 규정(Compliance Program; CP)⁴⁷⁾ 도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CP는 외환법을 비롯한 수출통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 과거에는 수출관리 사내규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지만, 기업 이외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도 수출관리에 필요한 내부규정의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와 관련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CP를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CP에서 ①수출관리체계, ②거래심사, ③출하관리, ④감사, ⑤교육, ⑥자료관리, ⑦자회사 및 관련회사에 대한 지도, ⑧보고 및 재발방지 등 모두 8가지 항목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⁸⁾. CP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이 위에서 살펴본 특정중요화물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준수해야할 기준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CP의 책정 및 제출이 모든 수출기업들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경제산업성은 CP를 제출한 기업에게 포괄허가의 취득이 가능해지고 개별허가에서도 우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CP를 작성하여 제출한 기업명단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21년 7월 1일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653개 기업이 게재되어 있다⁴⁹⁾. 최근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의 수출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CISTEC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를 파견하고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와도 연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수출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용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ISTEC에서는 CP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업종 및 기업규모 등에 따른 6가지 유형의 CP 표준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6. 처벌규정

일본은 수출통제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 및 수출허가 심사 등과 더불어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위법 수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⁵⁰⁾. 수출통제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외환

47) 한국에서는 자율준수제도라고 지칭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였다.

48) https://www.meti.go.jp/policy/anpo/compliance_programs_pdf/20201228yushutsukanrinaibukitei.pdf(검색일: 2021년 9월 20일).

49) https://www.meti.go.jp/policy/anpo/compliance_programs.html (검색일: 2021년 9월 20일).

50) 伊藤正実, “日本,” 浅田正彦(編), 『輸出管理: 制度と実践』, 有信堂, 2012, pp.197-199.

법에 따라 벌칙과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정부당국으로부터 패널티가 주어진다. 일본은 2017년 5월에 외환법을 개정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가. 벌칙

외환법의 제9장에서는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법 제69조의 6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엔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하는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무허가로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외환법 제69조의 7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외환법 제7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백만 엔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하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게 된다.

수출업자 등이 외환법 제55조의 10 및

성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이 조언이나 지도를 하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권고가 이루어진다. 해당 기업 등이 권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경제산업대신이 재차 명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외환법 제71조에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수출허가는 외환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건이 부여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외환법 제72조에서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환법 제69조의 6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최대 7억 엔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마찬가지로 외환법 제69조의 6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0억 엔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외환법 제69조의 7과 관련해서는 최대 5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 행정제재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나 기술을 수출·제공하였을 경우, 경제산업대신은 외환법 제53조 및 제25조의 2에 따라서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수출 또는 기술 제공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제재는 앞에서 살펴본 벌칙과 벌

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벌칙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森本(2017)에 따르면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⁵¹⁾. 첫째, 한 번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모든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형사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물품의 종류나 수출지역의 수가 하나 내지는 소수인 경우가 많지만, 행정제재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둘째, 행정제재는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업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다. 경고

경제산업성은 전략물자 등을 무허가로 수출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의 해명 및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후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형사고발이나 행정제재와 더불어 외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무역경제협력국장의 경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산업성의 처분은 법령 위반의 원인, 실제 용도, 사후심

사에 대한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경미한 사안이라면 경위서나 보고서 제출로 끝나게 된다.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에 따르면, 2019년도에 이루어진 처분 가운데 보고서 제출이 63%로 가장 많았고, 경위서 제출 및 구두주의가 22%를 차지했다. 경고 처분은 기업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사회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기업이 취득한 포괄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⁵²⁾.

IV.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1. 수출규제조치의 단계별 내용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9년 7월 1일 사실상의 수출규제를 단행하기로 발표하였다⁵³⁾.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의 선진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발전해 왔으며, 충실히 관리·이행되어 왔다는 점은 일본 내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⁵⁴⁾.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한국과 관련한 수출관리에 부

51) 森本正崇, “輸出管理の概要12-罰則・リスク管理,” 『貿易と関税』, 第65巻, 第3号, 2017, p.68.

52) 森本正崇, 위의 글, p.69.

53)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54) CISTEC事務局, “日韓間の混乱を招いた安全保障輸出管理に関する誤解,” *CISTEC Journal*, 第183号 (2019), p.33.

적절한 사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출규제를 단행하였다. 여기서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설령 해당 사안이 부적절했더라도 부정하거나 위법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⁵⁵⁾. 만약 부정하거나 위법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수출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수출기업의 자율규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기업이 취득한 포괄허가가 취소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보고되지 않았다⁵⁶⁾.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우선 1단계로 2019년 7월 1일에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지위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정령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일본은 2005년 6월에 행정절차법을 개정하면서 정령, 성령, 심사기준 등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그 안을 공표하여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퍼블릭

코멘트(의견공모절차)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둘째, 운용 통달 등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한국으로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할 시 그 동안 적용해오던 일반포괄허가 및 특별일반포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의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운용 통달 등의 개정은 의견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의 통달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행정절차법 제6조에서는 심사당국의 자의적인 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 무역국안전보장무역관리과의 1999년 6월 18일 통달에서는 수출허가 심사기간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로 정해놓고 있다⁵⁷⁾. 경제산업성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산업계에 따르면 수출허가는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대략 서류를 접수한 이후 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⁸⁾.

상기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운용 통달 상

55) CISTEC事務局, 위의 글, p.37.

56) 2019년 7월 12일 경제산업성 본부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회의에서 일본 측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의 운영 부실과 한국 기업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인한 일본 기업의 수출관리 미흡 우려를 제기하였다(정하정, 2019, p.17).

57) <https://www.meti.go.jp/policy/tsutatsutou/tuuti1/aa259.pdf> (검색일: 2021년 8월 1일).

58) https://www.cistec.or.jp/service/kankoku/190830pubucome_an.pdf (검색일: 2021년 8월 1일).

의 수출통제 지역구분을 변경하고 한국을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의 수출통제 지역구분은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서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운용 통달에서는 지역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い(이)지역①부터 ち(치)지역까지 모두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지만 새롭게 り(리)지역을 신설하여 한국만 이곳에 분류하였다. 각각의 국가들은 13개로 구분된 지역에 중복 포함되는데, 여타 백색국가들과 함께 い(이)지역①에 포함되었던 한국은 と(토)지역①과 り(리)지역에 새롭게 분류되었다.

경제산업성은 운용 통달을 개정하여 한국을 새로운 지역 구분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개정하여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포괄허가의 적용을 배제하였다⁵⁹⁾. 그밖에도 통달인 『수출허가서비스거래 허가특정기록매체 등 수출 등 허가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를 개정하여 한국으로 수출되는 세 품목을 일본이나 백색국가로 재수출할 경우에 경제산업성의 사전동의가 필

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출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의 종류도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기 품목들의 수출허가 신청창구도 기존의 경제산업국 내지는 오키나와종합사무국에서 경제산업성 본성(안전보장무역심사과)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2단계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함으로서 별표 제3에서 한국을 삭제하여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2019년 7월 1일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였는데, 동년 7월 24일에 해당 절차를 종료하고 8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⁶⁰⁾.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르면, 총 4만 66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약 95%가 정령 개정에 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2019년 8월 2일 각의 결정을 거쳐 동년 8월 7일에 개정된 정령을 공포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하였다. 결국 한국은 2004년 1월 20일 백색국가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에서 제외되었다. 백색국가의 수는 2012년 8월에 불가리아가 추가된 이후 변함이 없다가 한국이 제외되면서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59) 千葉晴夫, “2019年度政省令等の改正の概要,” *CISTEC Journal*, 第184号, 2019, p.7.

60) 행정절차법 제38조 3항에 따르면, 의견공모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 상의 시급성 및 의견 대다수가 정령 개정에 찬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캐치올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리스트 통제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대량살상무기 캐치올 통제에 따라서 용도 요건이나 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면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따라서 경제산업성의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가 요구된다. 1단계 수출규제조치에서는 상기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8월 28일 이후부터 수출 기업들의 일반포괄허가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포괄허가취급요령 별표A와 별표B에서는 각각 수출무역관리령과 외국환령에서 규제하는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해서 수출국별로 사용이 가능한 포괄허가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이(이)지역①은 특별일반포괄허가와 일반포괄허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ㄹ(리)지역에 해당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만이 적용된다.

<표 4>는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동향을 2019년부터 분기별로

조사한 것이다⁶¹⁾. 먼저 불화수소의 경우, 수출규제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2분기부터 한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2019년도 3분기의 대한국 수출량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9%와 79.6%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한국에서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일부 성공하면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불화수소는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수출규제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9년 2분기에 전체 수출량 및 수출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7.4%와 84.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출규제로 인하여 2019년 3분기에는 한국의 비중이 수량 및 금액 모두 38.3%까지 급감하였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2021년 3분기 현재 전체 수출량 및 수출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4.4%와 41.8%로 나타났다. 한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불화수소 전체 수출 또한 감소하였다.

61) 일본의 HS코드는 9단위까지 세분류하고 있지만,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성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양으로 정해지므로 HS코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표 4> 일본의 수출규제품목 수출동향

【불화수소(HS코드: 2811.11-000)】

연도	분기	한국		세계	
		수량(톤)	금액(백만엔)	수량(톤)	금액(백만엔)
2019	1	10,082	2,083	11,196	2,423
	2	8,436	1,778	9,648	2,104
	3	479	405	1,667	752
	4	796	238	2,050	621
2020	1	1,290	312	2,519	700
	2	894	289	1,952	629
	3	1,383	343	2,402	663
	4	1,383	336	2,742	746
2021	1	1,478	335	2,621	709
	2	1,611	386	3,117	881
	3	1,099	255	2,020	610

【레지스트(HS코드: 3707.90-000)】

연도	분기	한국		세계	
		수량(톤)	금액(백만엔)	수량(톤)	금액(백만엔)
2019	1	572	8,902	15,563	74,442
	2	576	9,070	15,769	79,582
	3	736	12,228	15,433	80,886
	4	519	7,283	16,275	80,700
2020	1	705	11,188	15,542	82,442
	2	679	11,738	11,528	73,285
	3	729	11,415	10,377	70,080
	4	891	12,617	14,901	82,053
2021	1	894	12,693	14,335	85,951
	2	917	14,000	14,231	89,370
	3	605	9,578	9,623	62,256

【플루오린 폴리이미드(HS코드: 3911.90-300, 3911.90-900)】

연도	분기	한국		세계	
		수량(톤)	금액(백만엔)	수량(톤)	금액(백만엔)
2019	1	1,305	1,200	24,283	17,102
	2	1,259	1,297	23,083	17,643
	3	1,147	1,353	22,923	16,576
	4	1,079	1,149	24,876	17,721

(계속)

연도	분기	한국		세계	
		수량(톤)	금액(백만엔)	수량(톤)	금액(백만엔)
2020	1	1,002	1,093	22,753	16,259
	2	1,063	1,228	17,324	13,822
	3	825	1,109	19,186	14,504
	4	1,700	1,570	26,204	18,977
2021	1	1,366	1,430	26,333	20,050
	2	1,265	1,422	24,105	18,914
	3	807	974	16,540	12,958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레지스트는 2019년 4분기에 대한 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20년에 진입하면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레지스트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한국 수출은 수출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출규제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9년 2분기에 레지스트의 전체 수출량 및 수출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7%와 11.4%였지만, 이후 2020년에 크게 증가하여 2021년 3분기에는 한국의 비중이 각각 6.3%와 15.4%를 기록하였다. 레지스트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부터 포괄허가의 대상으로 다시 전환되었다는 점도 대한국 수출 규모가 유지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

료된다.

마지막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2020년 4분기에 크게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대한국 수출에서만 엿보이는 것은 아니며 폴리이미드의 전체 수출 동향과 유사하다. 수출규제 직전인 2019년 2분기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량과 금액에서 각각 5.5%와 7.3%로 나타났으며, 이후 2020년 1분기까지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하여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수량과 금액에서 각각 5.2%와 7.5%를 기록하였다. 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의 경우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효과는 미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수출규제조치의 법적 쟁점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이루어진 직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11일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20년 6월 18일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7월 29일에 패널이 설치되었다⁶²⁾. 하지만, 패널이 설치된 이후에도 1년이 넘도록 패널 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20일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개정하였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괄허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2019년 9월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표 5>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	
2019년 7월 4일	3품목을 포괄수출허가의 대상에서 배제	운용 통달 등 개정
2019년 7월 12일	도쿄에서 양국 정부의 과장급 실무회의 개최	
2019년 8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결정	
2019년 8월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2019년 9월 11일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양자협의 요청)	
2019년 12월 20일	레지스트에 대한 특정포괄허가의 사용을 허용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
2020년 6월 18일	한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	
2020년 7월 29일	WTO 패널 설치	

WTO 제소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GATT 제1조(일반적 최혜국 대우), 제8조(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제23조(무효화 또는 침해)를 비롯하여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그리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사실 일본의 조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출규제조치는 특정 국가를 차별 대우하고 일부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최혜국대우와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⁶³⁾.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한국이 의도적으

62) Japan-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DS590).

로 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를 제소 근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WTO 분쟁에서 GATT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⁶⁴⁾. 즉, 일본이 GATT 및 WTO 협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GATT 제21조를 원용하여 한국에 대한 조치가 국가안보상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⁶⁵⁾.

GATT 및 WTO는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서 회원국에 대한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 부과 금지, 수출입 수량제한의 금지, 최혜국대우, 그리고 내국민대우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GATT 제21조는 (a)공개 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b)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i)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ii)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에 관련된 조치, (iii)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를 체약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c)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서 체약당사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川瀬(2021)는 수출규제조치의 내용이나 한일 양국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GATT 제21조 (a) 및 (b)(i)과 (iii)이 원용되기는 어렵고, (b)(ii)의 정합성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⁶⁾.

GATT 제21조 제(b)항에서는 체약국이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폭넓게 해석하면 국가안보상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WTO의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⁶⁷⁾. 실제로 미국은 해당 조항에 따

63) 塩尻康太郎,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関する法的考察: GATT第21条(b)(ii)をめぐる議論を中心に”, 『国際法研究』, 第9号, 2021, p.101.

64) 구민교, “무역-안보 연계 관점에서 본 한일 무역 갈등: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24호, 2021, p.229.

65) 塩尻康太郎, 앞의 글, p.91.

66) <https://www.jiia.or.jp/research-report/post-44.html>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른 안보이익 보호의 판단결정 주체는 미국 자신이며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⁶⁸⁾. 문제는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가 두문(chapeau)과 (a)부터 (j)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외로 인정되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 제21조는 그러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⁶⁹⁾.

GATT 제21조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서는 GATT 및 WTO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다행히 2019년 4월에 채택된 러시아-통과운송 분쟁⁷⁰⁾과 관련한 패널 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본 사건은 러시아가 2016년부터 자국을 경유하여 카자흐스탄으로 운송되는 우크라이나 물품에 대해서 특정 경로만을 이용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러시아 경유 자체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 우크라

이나가 WTO에 제소한 것인데, GATT 제21조에 대한 WTO 차원의 실체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건에서 러시아는 상기 조치가 GATT 제21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며, WTO 패널은 해당 조항을 원용하는 조치에 대한 관찰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패널은 러시아의 조치가 완전히 자기 결정적이지 않으며 패널이 해당 사안에 대한 관찰권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재량적 판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군사적 충돌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원용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⁷¹⁾. 이러한 패널의 판단은 한일 분쟁에서 수출규제조치가 GATT 제21조에 정합적인지에 대한 입증을 일본 측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래 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러시아-통과

67) 松下満雄, “国家安全保障と通商制限”, 『法律時報』, 第91卷, 第10号, 2019, p.11.

68) 이천기,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9권, 제17호, 2019, p11.

69) 松下満雄, 앞의 글, p.13.

70)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DS512).

71) 러시아-통과운송 관련 WTO 패널 판정과 관련해서는 장성길(2021)을 참고하기 바란다.

운송 분쟁에서의 패널 보고서는 이후에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간 지식재산권 분쟁⁷²⁾에도 영향을 미쳐서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향후 국가안보와 관련한 WTO 분쟁에서는 러시아-통과운송 사례와 유사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일 분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⁷³⁾.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GATT 제21조(b)(ii)를 원용할 가능성이 크다. WTO 패널이 구성되고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은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가 자국 안보에 얼마나 우려할 수준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국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⁷⁴⁾.

V.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통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일본이 단행한 對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형성되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냉전시기에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COM이 해체된 이후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WA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리스트 통제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제에 모두 설립부터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모두 법령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무기 수출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통제의 운용 방침은 2000년대 들어서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2014년에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결정하면서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방위산업체의 무기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72) Saudi Arabia-Meas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DS567).

73) 塩尻康太郎, 앞의 글, p.103.

74) 위의 글, p.111.

수 있었다. 첫째,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정책적 개입과 제도 운용상의 유연성이 크게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佐藤(2007)는 일본의 외환법이 국제조약, 국제레짐, UN 제재 등을 실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개정되었으며, 수출통제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합의가 국내 법령에 용이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한다⁷⁵⁾. 실제로 수출통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인 외환법과 그 정령인 수출무역관리령에서 정하지만,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세부적인 사양이나 운용방침 등은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성령을 비롯하여 법령에 분류되지는 않지만 구속력이 강한 통달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수출통제 및 허가와 관련한 제반 업무가 경제산업성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운용 등에 있어서도 통일성과 효율성을 발휘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도 경제산업성이 단지 통달을 개정하여 세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의 대상으로 변경하고 한국의 지역구분을 새로운 카테고리 분류함으로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통제를 통한 국가안보의 유지

를 위해서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일본은 스스로가 확산국이 되지 않도록 국내기업들에게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⁷⁶⁾.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도시바 기계의 COCOM 위반사건 당시 기업의 불법행위가 미일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례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국내기업들에게 엄격한 수출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처해 왔다.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수출허가의 필요성을 일차적으로 기업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최근의 수출통제 위반사례를 보면 의도적인 불법 행위보다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기업내부 수출관리의 미흡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⁷⁷⁾.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가 매우 정교하게 설

75) 佐藤丙午, 앞의 글, p.42.

76) 위의 글, p.43.

77) https://www.meti.go.jp/policy/anpo/seminer/shiryo/anpo_anpokanri_2021.pdf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소재에 대해서 법령의 개정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 없이 경제산업성의 통달을 개정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한국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통제 상의 지위를 낮추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일본의 수출기업들을 다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양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해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하며 對일본 의존도가 큰 부품과 소재 등의 수출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설치된 상황이다. 향후 WTO 분쟁 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은 GATT 제21조를 원용하여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필수적인 안보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川瀬(2021)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소위 경제적 국가책략(economic statecraft)의 측면이 있으며, 정치적 동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안보상 예외규정의 남용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수출규제조치가 단행된 직후 당시 일본의 아베(安倍) 총리를 비롯하여 스가(菅) 관방장관, 세코(世耕) 경제산업대신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배경으로 징용공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적 국가책략의 일환으로 취해진 통상조치가 WTO 규범과 정합성을 갖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구민교, “무역-안보 연계 관점에서 본 한일 무역 갈등: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24호, 2021, pp.212-237.

김양희,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과 정책 시사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30,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김양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의 ‘탈일본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일본비평』, 제24호, 2021, pp.20-51.

이천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9권, 제17호, 2019, pp.1-18.

장성길, “국가안보 예외 관련 재판관할권과 판단의 기준 검토”, 『통상법률』, 제150호, 2021, pp.32-58.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총람: 1권. 국제 수출통제 및 우리나라 제도』, 서울: 전략물자관리원, 2020.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총람: 2권. 주요국 수출통제』, 서울: 전략물자관리원, 2020.

정하정,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연구”, 수출통제 Brief Vol.3, 2019, 서울: 전략물자관리원.

〈일문〉

天野正固, “我が国の安全保障輸出管理制度”, 『月刊JADI』, 第603号, 1997, pp.31-37.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 “韓国の「戦略物資輸出入告示」改正案に関する意見”,
https://www.cistec.or.jp/service/kankoku/190830pubucome_an.pdf(검색일: 2021년 8월 1일).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 “2020年度事業報告書”, <https://www.cistec.or.jp/about/cistec/jo-hokokaisiryō/3-jigyōhoukoku.pdf> (검색일: 2021년 1월 3일).

石川雅啓, “安全保障貿易管理”, 『国際金融』, 第1325号, 2019, pp.14-17.

_____, “韓国の安全保障貿易管理制度とそれに係わる企業支援体制の考察”, 『アジア市場経済学会年報』, 第15巻, 2012, pp.53-63.

伊藤正実, “日本”, 浅田正彦(編), 『輸出管理: 制度と実践』, 東京: 有信堂, 2012, pp.197-199.

大川幸雄, “我が国の武器輸出管理政策の変遷: 武器輸出三原則等の緩和と防衛産業の消極性”, 『月刊JADI』, 第828号, 2016, pp.1-17.

川瀬剛志, “日韓紛争にみるWTO体制と安全保障貿易管理制度の緊張関係”, 日本国際問題研究所研究レポート, <https://www.jiia.or.jp/research-report/post-44.html>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経済産業省安全保障貿易管理課, “日本の安全保障貿易管理について: 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と改正について”, 『配管技術』, 第47巻, 第10号, 2005, pp.35-40.

経済産業省, “安全保障貿易の概要”, <https://www.meti.go.jp/policy/ampo/gaiyou.html>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経済産業省, “安全保障貿易管理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olicy/ampo/seminer/shiryo/ampo_ampoanri_2021.pdf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経済産業省, “企業等の自主管理の促進”, https://www.meti.go.jp/policy/ampo/compliance_programs.html (검색일: 2021년 9월 20일).

経済産業省, “キャッチオール規制”, <https://www.meti.go.jp/policy/ampo/ampo03.html> (검색일: 2021년 9월 20일).

経済産業省,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経済産業省, “物資・技術のマトリックス”, https://www.meti.go.jp/policy/ampo/matrix_intro.html (검색일: 2021년 1월 10일).

経済産業省, “輸出管理内部規定の届出等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olicy/ampo/com->

- pliance_programs_pdf/20201228yushutsukanrinaibukitei.pdf(검색일: 2021년 9월 20일).
- 経済産業省, “輸出許可・役務取引許可に係る審査期間等について(お知らせ)”, <https://www.meti.go.jp/policy/tsutatsutou/tuuti1/aa259.pdf> (검색일: 2021년 8월 1일)
- 田村博道・森本正崇, 『輸出管理論: 国際安全保障に対応するリスク管理・コンプライアンス』, 東京: 信山社, 2008.
- 沓脱和人, “武器輸出三原則等の見直しと新たな防衛装備移転三原則”, 『立法と調査』, 第361号, 2015, pp.55-67.
- 佐藤丙午, “核不拡散と日本の安全保障政策”, 『海外事情』, 第55号, 2007, pp.40-53.
- 塩尻康太郎,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関する法的考察: GATT第21条(b)(ii)をめぐる議論を中心に”, 『国際法研究』, 第9号, 2021, pp.90-113.
- 戦略物資輸出管理研究会(編), 通産省戦略物資輸出検査官室(監修), 『<新訂版>戦略物資輸出管理マニュアル』, 東京: 商事法務研究会, 1989.
- 千葉晴夫, “2019年度政省令等の改正の概要”, *CISTEC Journal*, 第184号, 2019, pp.2-25.
- 寺田一雄, “日本の輸出入貿易管理制度”, 『貿易ダイジェスト』, 第48巻, 第2号, 2008, pp.14-22.
- 浜谷源蔵, 『最新貿易実務』, 東京: 同文館出版, 2003.
- 貿易経済協力局安全保障貿易管理課, “安全保障貿易管理の最近の取り組みについて”, 『経済産業ジャーナル』, 第38巻, 第2号, 2005, pp.18-19.
- 松下満雄, “国家安全保障と通商制限”, 『法律時報』, 第91巻, 第10号, 2019, pp.6-13.
- 森本正崇, “輸出管理の概要4-リスト規制②”, 『貿易と関税』, 第64巻, 第7号, 2016, pp.32-37.
- 森本正崇, “輸出管理の概要5-キャッチオール規制①”, 『貿易と関税』, 第64巻, 第8号, 2016, pp.68-74.
- 森本正崇, “輸出管理の概要12-罰則リスク管理”, 『貿易と関税』, 第65巻, 第3号, 2017, pp.65-71.
- 横山恭三, 防衛調達研究センター編集委員会(編), 『我が国の産業競争力の低下及び安全保

障上の脅威につながる技術情報流出の実態と対応策について』, BSK第26-2号, 東京: 防衛基盤整備協会, 2013.

CISTEC事務局, “日韓間の混乱を招いた安全保障輸出管理に関する誤解”, *CISTEC Journal*, 第183号, 2019, pp.33-44.

〈영문〉

Gill, Bates, Kensuke Ebata, and Matthew Stephenson, “Japan’s Export Control Initiatives: Meeting New Nonproliferation Challeng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4, 1996, pp.30-42.

Riko, Hisashi, “Export Control in Japan and CISTEC.” in Dai Tamada and Philippe Achilleas(eds.). *Theory and Practice of Export Control: 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ingapore: Springer, 2017, pp.43-52.

World Trade Organization, “DS512: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2_e.htm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World Trade Organization, “DS567: Saudi Arabia-Meas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67_e.htm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World Trade Organization, “DS590: Japan-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0_e.htm (검색일: 2022년 2월 20일).

[국문초록]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송 준 현

일본 정부가 2019년에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해 우방국을 압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수출통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수출통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형성되어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냉전 시기에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정부당국의 정책적 개입과 제도 운용상의 유연성이 크게 확보되어 있으며, 수출통제를 통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서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일본의 복잡한 수출통제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의 공급을 언제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은 GATT 21조를 원용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국가안보상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GATT 제21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통과운송조치에 관한 WTO 패널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WTO 협정과의 정합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주제어

일본, 수출통제,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출규제, 백색국가, 캐치올 통제, 경제산업성, 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

[Abstract]

A Study on Japan's Export Control System

Joon Heon Song

Considering that export control system has been used to secure its national interests, Japan's export restriction measures on South Korea in July 2019 certainl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not only Japan's recent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but also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e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Japan's export control system was formed based on the regime in the Cold War era, which then evolved over the last 70 year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Japan's export control system has characteristics such as flex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ease of intervention by government authorities. Moreover, Japanese export companies have a lo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Fin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Japan has artfully utilized its complex export control system to put diplomatic pressure on South Korea, implying and maintaining the possibility of further export restrictions on critical parts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South Korea's major export items. In September 2019, South Korea filed a complaint with the WTO against Japan's measures to restrict exports of fluorinated polyimide, resist polymers, and hydrogen fluoride, as well as their related technologies. I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initiated, Japan is likely to invoke GATT Article XXI in its defense. In terms of the dispute over measures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the Panel Report on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DS512)* provides a clue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he burden of proof on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nd the necessity of the export restriction measures, Japan's main argument may include the inadequacy of South Korea's export control practices.

Key Words

Japan, Export Control, Strategic Items, Export License, Export Restriction, White List, Catch-all Control,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GATT Article XXI(Security Exceptions)

최근 정부의 기업 규제 관련 정책 실험 (Policy Experimentalism)

- 법과 발전학(law and development) 및 국제경제법 관점에서의 제언 -

인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박 태 정

*논문접수 : 2022. 1. 16. *심사개시 : 2022. 1. 24. *게재확정 : 2022. 1. 29.

〈 목 차 〉

- | | |
|---|--------------------------|
| I. 서론 | 2. 대기업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 |
| II. 법과 발전학에서의 정책 실험을 통한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의 필요성 | 일인 지정에 대한 국제통상법 위반 여부 |
| III.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실험 | IV. 결론 |
| 1. 중소기업 보호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국제통상법
위반 여부 | |

I. 서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의 특수성과 문화가 잘 반영된 법과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¹⁾

자국 시장의 특수성과 문화가 반영된 법과 제도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선진국 문턱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정책 실험주의(Policy Experimentalism)²⁾를 통해 그러한 법과 제도를 찾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

1) Lan Cao, *Culture in Law and Development: Nurturing Positive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참조. 동 저서는 국가 발전에 문화라는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법과 발전학 및 국제법 학계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점의 원인을 지적한 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문화의 변화를 통한 국가발전 방안을 설명함.

2) Dani Rodrik, *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229 (2008); Dani Rodrik, *Second-Best Institutions*, 98 Am. Econ. Rev. 100, 100-104 (2008);

한다.

정책 실험주의는 그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과 제도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수처를 설립하였고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총 28번의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국가가 위와 같은 정책 실험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닌 다른 국가와의 약속이다. 즉,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지켜가면서, 다시 말해 국제법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정책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법 위반을 감행하는 정책 실험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간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중소기업 및 대기

업 관련 다양한 정책실험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기업뿐 아니라 외국 국적의 기업도 존재하므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외국 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 규제는 어느 분야보다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최근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려 중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련 조치들이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을 고려 중에 있다. 즉, 대기업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중소기업들만 중고자동차판매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계와 언론에서 동 적합업종 지정이 국제통상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거세게 하였고 결국 동반성장위원회는 동 분야의 적합업종 지정이 부적합하다는 의견

Dani Rodrick, *The Globalization Paradox :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WW Norton & Company 171 (2011); Joseph E.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W. Norton & Company (2002); Jagdish Bhagwati, In *Defense of Glob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³⁾ 2022년 1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⁴⁾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특정 유통외국기업의 총수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⁵⁾하려는 실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내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자 도입한 우리나라의 동일인 지정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또한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⁶⁾

본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적합업종 지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이라는 정책이 실제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문화가 잘 반영된 정책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는 않는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및 공정거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이다. 단, 저자는 국제법 전문가로서 위 정책들이 국제법 및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동 정책들의 입안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우선, 법과 발전학에서 말하는 정책실험주의가 무엇이며 문화와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그 나라에 걸맞는 정책을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적합업종 지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국제통상법 위반 여부를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법과 발전학⁷⁾에서의 정책 실험을 통한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의 필요성

3) 동반위 “중고차 생계형 부적합 결론, “대기업 지배력 높지 않다”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1911068240g> (한경, 2019.11.06.)

4)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 개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830>

5)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근접한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기업집단들의 최상위 회사 또는 그룹 소유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회사와 최상위 회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뒤 동일인을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시의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6) 쿠팡 총수지정 논란- 산업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착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677AT6H> (서울경제, 2021.4.21.)

7) 법과 발전학의 기본서는 다음을 참조, Mariana Mota Prado & Micahel J. Trebilock, Advanced Introduction to Law and Development (2nd edition, Edward Elgar, 2021).

법과 발전학에서는 해당 국가 발전을 위해서 법과 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그 나라의 문화 및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를 찾는 것이 경제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화 및 시장 특수성이 반영된 법과 제도를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Appropriate economic and legal policies)”라고 나름 정의 내려 볼 수 있으며 수많은 국가는 정책 실험주의를 통하여 자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적절한 법과 경제 정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시장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서구 선진국에서 성공한 이념들을 그대로 채택한다고 해서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념들이 해당 국가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책실험주의를 통한 ‘토착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7~80년대 고도성장 시기에 정부에서 수출 대기업에 제공한 수출 보조금 정책이 그 당시 대한민국이 과감한 정책 실험을 통해 찾아낸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을 한다.⁸⁾ 수출 보조금 자체는 이론적으로 시장왜곡 현상을 일으켜 자유 시장 경쟁에 방해가

되는 정책이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은 강력한 정부를 바탕으로 한 수출지향정책을 고수하면서 수출보조금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은 어떻게 찾는가? 그 시장에 걸맞은 정책을 찾고자 한다면 우선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닌 현실이며 그 현실 속에는 해당 국가의 독특한 의식과 문화가 깃들여져 있다. 최근 극찬을 받은 코로나 K-방역은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정책으로 적절한 법과 정책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독특한 의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국 시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대책 정책실험의 28번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정부가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기가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적절한 법과 정책을 찾는 것은 왜 그리 어려운가? 정부가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정부와 시장 주체 간의 정

8) Dani Rodrik, *Taking Trade policy Seriously: Export Subsidization as a case study in policy effectivene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353 (1993).

보 비대칭 문제⁹⁾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만 정부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험과 지식은 시장의 경험과 지식에 못 미친다. 사고에 대한 대비도 시장이 정부보다 빠르다.

그러면 정부와 시장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어떻게 감소시키는가? 정부는 공청회 및 간담회 등으로 시장과 많은 대화를 하고자 하고 실제 이러한 대화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국방부는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회사들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IT 기술을 배우고자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정부와 시장 간의 만남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정부 공무원들은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 다시 정부로 복귀하는 경로가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중진국 및 후진국은 이와 같은 시스템의 부재로 행정부의 역동성과 시장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설사 정부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을 찾아냈다고 하여도 동 정책이 과연 시의적절하며 국제법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걸맞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동 정책이 타 국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단기적으로는 동 정책이 해당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정책의 수명은 길지 않다. 중국은 자국의 국영기업(state owned enterprise) 정책이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중국의 국영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유지되고 있다.¹⁰⁾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7~80년대의 수출보조금도 그 당시에는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이었지만 시대가 바뀌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과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시장 왜곡현상을 일으켜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재는 WTO 보조금 협정 및 여타 국제 투자 협정문의 이행요건 조항들이 동 수출보조금을 금지

9) 경제학에서 시장에서의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 구조를 말한다.

10) Petros C. Mavroidis and Andre Sapir, *China and the WTO*,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하고 있다.¹¹⁾

요약하면, 한 국가의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그 국가의 정부가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을 찾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의 의식이 반영된 시장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주 내에서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을 구사해야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III.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실험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들어 특히 기업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이라는 대기업 규제 정책이 우리나라의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인지 여부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단지 동 정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여 정부가 추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

는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입안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중소기업 보호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국제통상법 위반 여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자동차판매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을 특별법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이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고 하는 외국 회사(또는 그 회사가 투자한 외국계 회사)의 사업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 등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외국 회사에 대한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은 모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므로 대기업인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 차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상공인’인 국내사업자와 비교하여 볼 때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외국 사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가 있다.

11) David Collins,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Investment Incentive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Law*, Edward Elgar (2015).

또한 만일 자동차전문수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수입사 및 딜러사의 자동차전문수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수리대상이나 운영방식 제한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이 있게 될 경우, 이는 수입사 및 딜러사가 수입자동차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증수리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경우 결과적으로 수입자동차의 판매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자동차에 대해 불리한 조치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실제,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 모두 우리나라가 시장을 개방한 서비스 분야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중고차 판매서비스/자동차전문수리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유보를 두고 있고, 한-EU FTA의 경우도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한다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둔 것 외에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이나 자동차전문수리업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달리 유보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¹²⁾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우리나라의 한-미 FTA 및 한-EU FTA에 의한 시장접근 관련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려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른 허가” 내지 “경제적 수요 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수요 심사”에 관하여는 FTA상 정의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설립요건에 있어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공급자의 자격과는 관계없는, 공급업체의 수요-공급에 관한 특정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¹³⁾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그 요건(특히 사업체의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은 공급자의 자격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데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경제적 수요 심사나 그에 따른 허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2)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fta.go.kr/main/>

1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통상관련 용어집에서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경제적 수요심사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반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지 여부의 결정을 정부·업계·전문직 협회가 통제하는 제도. 이 제도는 보통 성격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어 보호주의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경제적 수요심사는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장에서 추가적인 경쟁의 출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음.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S 제16조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의 한 예시로 제시하고 있음.”

한편, 한-미 FTA 및 한-EU FTA의 서비스 양허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 서비스나 자동차전문수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나 판매/운영방식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나 유보가 설정된 바 없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판매/수리대상이나 판매/운영방식 등에 대해 사후적인 제한이 가해질 경우 역시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따른 시장접근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중고자동차판매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과 관련하여 사후적인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FTA상 시장접근의무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대기업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국제통상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구분, 지정해서 발표한다. 기업집단

으로 지정되면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사익편취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¹⁴⁾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동일인이 지정돼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유추해보면, 동일인이란 '2개 이상의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소위 총수를,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최고 정점에 있는 회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규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한 미국계 유통기업의 대표 개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이라는 정책적 실험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는

14) 정영식,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에 관하여, 한국경제, 2021.11.2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41542i>

15) 정영식, 앞의 칼럼.

언론과 학계에서 찬반이 나뉘어져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21년 초 해당 미국 기업의 대표에 대해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동일인 지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기업의 대표 개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이라는 정책이 실제 우리나라에 걸맞은 기업 규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정책 자체만을 떼어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과 미국 간 양국의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해 규정한 한미 FTA 투자 챕터 규정에 대한 위반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미국 기업뿐 아니라 실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이들 외국인 기업 중 동일인 지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의 대표 개인이 아닌 국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최상위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해당 미국 기업만 콕 집어서 그 기업의 대표 개인에 대해 동일인 지정을 한다면 이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가 간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한미 FTA 제11.4조(최혜국대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는 한미 FTA 제 11.4조 상, 미국 투

자자의 한국 내 투자에 대하여 동종 상황의 제3국 투자자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한 취급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미국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각종 규제 의무를 준수하게 된다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Fair & Equitable Treatment)를 부여하기로 약속한 한미 FTA 제11.5조(대우의 최소 기준)의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FET 의무의 핵심적 요소이며, *Enron v. Argentina* 사건, *Azurix v. Argentina* 사건¹⁶⁾ 등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FET 의무 위반이 인정된 바 있다.

물론 해당 미국 기업은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소비자에게도 매우 친숙한 기업이므로 위 FTA 조항의 위반을 근거로 론스타와 엘리엇처럼 손해배상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 원 혹은 수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를 제기할 것이라고 저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16) 해당 사건의 주 내용은 법무부에서 발간한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DIxNDg2JTJGYXJ0Y2xWaWV3LmRvJTNG>

하지만 더욱 더 큰 문제는 FTA 위반의 소지가 있는 위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에 있는 여타 외국 기업 혹은 한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 실험을 위해 법을 손쉽게 수정하여 국가 간 약속하기로 한 외국인 투자보호의무를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미국 기업은 유통업계 종사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외국인 기업들은 유통업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투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경제 분야의 수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적합업종 지정과 동일인 지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국제통상법 및 여타 국제법 규범을 관할하는 법무부,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관련 법안을 입안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적합업종 지정과 동일인 지정이라는 정책 실험을 하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제통상법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법적 정합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정책 실패가 나타나게 되고 정책 실패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국문초록]

최근 정부의 기업 규제 관련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alism)

- 법과 발전학(law and development) 및 국제경제법 관점에서의 제언 -

박 태 정

법과 발전학에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의 특수성과 문화가 잘 반영된 법과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정책 실험주의(Policy Experimentalism)을 통해 이러한 법과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약속, 즉 국제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련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과 제도를 정착하고자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규제 관련 정책들을 예로 들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정책실험주의를 감행함에 있어서 국제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주제어

법과 발전학, 정책실험주의, 대기업 중소기업 규제, 국제경제법

[Abstract]

Recent South Korea's policy experiments related to
corporate regulation

Recommend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Tae Jung Park

Law and development studies suggest that country-specific laws and institutions that reflect local environment and culture are prerequisites for becoming an advanced nation. Apparently,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establish country-specific laws and institutions that fit their local context by policy experimentalist approach. He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is critical in establishing such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ense, South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otential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establishing laws and institutions to regulate small and medium or large enterprises. This article examines such criticism in detail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law in conducting policy experimentalism.

Keyword

Law and development, Policy experimentalism, Regulations on Large 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ternational economic law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최 승 은
법무관 공 보 영

I. 회의 개요

1. 회의 경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과제로, 「국경간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범안, 이하 ‘규범안」(Draft Provisions on the Use and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을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제62차 작업반 회의는 2021. 11. 22. ~ 26.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제63차 작업반 회의(2022. 4. 4. ~ 8.)를 앞두고 회기간 비공식회의(2022. 3. 1. ~ 2.)가 개최되었다.

2. 회의 결과 요지

이번 제62차 작업반 회의 및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는 규범안에 대해 조문별 검토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특히 ① 정의 조항, ② 국경간 승인과 관련된 조항, ③ 조항간 표현의 통일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A/CN.9/WG.IV/WP.170, 이하 ‘초안’).

II. 주요 논의사항

1. 제1조 정의

① 초안 제1조 (c)호¹⁾에서 개인과 신원의 구속력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의 명칭을 “electronic identification”과 “authentication”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in the context of IdM services, means a process used to achieve sufficient assurance in the binding between a person and an identity.

“authentication”을 지지하는 측은 “identification”은 인증대상 자체 또는 결과로서의 상태 개념이라면, “authentication”은 인증대상을 증명하는 과정의 개념이므로 “authentication”이 정의조항 설명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identification”을 지지하는 측은 “authentication”이 국가마다 달리 이해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채택되기 곤란하며, “identification”이 UNCITRAL 전자상거래 규범에도 사용되는데 통일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논의 끝에 “electronic identification”을 대표적으로 정의하고, 다른 조항에서 “electronic identification”을 사용하는 것이 문맥상 부적합한지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는 신원관리(Identity management)가 두 가지 단계로 이뤄져(two-stage) 있고, 초안 제1조(c)호의 “electronic identification”은 의미상 두 가지 단계 중 두 번째 단계²⁾인데, “electronic identification”가 일부 조항(초안 제5조³⁾

등)에서 두 가지 단계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electronic identification”의 대안으로 신원관리의 두 가지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인 “IdM service”, “online authentication”, “electronic verification”, “credential verification” 등이 제안되었고, 초안 제1조(c)호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다.

② 초안 제1조 (g)⁴⁾호의 “IdM service provider”를 정의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초안 제6조에 규정된 서비스의 일부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항 문구 중 “a person that provides IdM services”를 “a person that provides any Idm service”로 수정하자는 사무국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초안이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초안 제6조에 규정된 서비스 일체를 제공함은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의도했다는 이유로 제

2) 첫 번째 단계는 초안 제1조 (i), “Identity proofing” means the process of collecting, verifying, and validating sufficient attributes to define and confirm the identity of a person within a particular context.

3) Article 5. Legal recognition of IdM

Subject to article 2, paragraph 3, **electronic identification**(두 가지 단계 모두를 의미함)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enforceability or admissibility as evidence on the sole ground that:

(a) The **identity proofing and electronic identification**(두 번째 단계를 의미함) are in electronic form;

or

(b) The IdM system is not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11.

4) Article 1. Definitions (g) “IdM service provider” means a person that provides IdM services;

안에 반대하였고, 최종적으로 “IdM service provider”와 “trust service provider”의 정의를 이용자(subscriber)들과 서비스 사용에 관한 ‘arrangement’를 한 자로 수정⁵⁾하여 이용자와 연계되도록 수정하였다.

한편, 작업반은 ‘arrangement’란 계약 체결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교섭 등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각종 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을 밝혔다.

③ 초안 제1조 (j)호 문안에 “Relying Party”의 정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내용을 “a person that acts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IdM services or trust services”로 확정하였다.

2. 제2조 적용범위 및 제3조 자발적 사용

초안 제2조 제2항의 (b)호 및 (c)호⁶⁾는 특정 서비스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초안 제3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지적에 따라 문안의 위치를 제2조에서 초안 제3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다.⁷⁾

한편, 초안 제2조 제3항은 신원관리 외에 신뢰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안에 신뢰서비스를 추가⁸⁾하였다.

3.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초안 제6조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5) Article 1. Definitions (g)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means a person who enters into an arrangement for the provision of identity management services with a subscriber;

6)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2. Nothing in this [instrument] requires:

(a)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b) **The use of a particular IdM service; or**

(c) **The use of a particular trust service.**

7) Article 3. Voluntary use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1.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 person to use an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trust service or **to use a particular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trust service** without the person’s consent.

8)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3. Nothing in this Law affects a legal requirement that a person be identified **or that a trust service** be use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defined or prescribed by law

9) Article 6. Obligations of IdM service providers

An IdM service provider shall[, **at a minimum**]:

(a) Have in place operational rules, policies and practices, as appropriate to the purpose and design of the IdM system, to address **[at a minimum]** requirements to:

제공자의 의무들은 최소한도로 규정된 것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문과 같은 조 (a)호에 “at a minimum” 문안을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같은 조 본문에 관해서는, 초안 제6조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들이 최소한의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았고, 같은 조 (a)호의 경우 ‘at a minimum’이 그 앞에 나오는 ‘as appropriate to the purpose and design of the IdM system’과 서로 충돌될 의견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때의 ‘at a minimum’은 조직 규칙 등 최소한의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맥락에 관한 것이어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같은 조 본문과 (a)호 모두에 “at a minimum”을 추가하였다.

4. 제7조 정보 유출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초안 제7조 제1항¹⁰⁾ (c)호에 대해서만 규정 위반사실이나 피해를 통지를 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law”)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c)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같은 항 (a)호 및 (b)호의 경우에도 해당 문구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in accordance with the law”를 삽입하였다.

5. 제8조 가입자의 의무

가입자가 자신의 신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초안 제8조¹¹⁾와 관련하여 본 조가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0) Article 7. Obligations of IdM service providers in case of data breach

1. If a breach of security or loss of integrity occurs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dM system, including the attributes managed therein,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law]**:
 - (a)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contain the breach or los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suspending the affected service or revoking the affected identity credentials;
 - (b) Remedy the breach or loss; and
 - (c) Notify the breach or loss [in accordance with the law].

11) Article 8. Obligations of subscribers

- The subscriber shall notify the IdM service provider, by utilizing means made available by the IdM service provider pursuant to article 6 or by otherwise using reasonable means, if:
- (a) The subscriber knows that the subscriber’s identity credentials have [or may have] been compromised; or
 - [(b) The circumstances known to the subscriber give rise to a substantial risk that the subscriber’s identity credentials may have been compromised.]

구체적으로 통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실무상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가입자가 정보의 유출 가능성(may have been compromised)을 인지한 경우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가입자가 위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문구를 해설서에 추가하자는 의견(the subscriber's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8 does not necessarily release the IdM service provider from liability.)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작업반은 초안 제8조 (a)호의 'or may have'는 삭제하고, 초안 제15조의 표현 중 초안 제8조 내용을 차용한 부분도 초안 제8조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6. 제9조¹²⁾ 신원관리 서비스 사용자에게 신원 인증

신원 인증에 특정한 목적(particular purpose)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당연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특정한 목적'이라는 표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또한, 신원관리 서비스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전자적 신원 인증을 위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a method is used for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of the person)"는 부분과 관련하여, 본 규범의 핵심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신원 인증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방법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방법(reliable method)"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대안^①)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reliable method"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신원관리 서비스의 신뢰성 요건을 규정한 초안 제10조에 부합해야 한다는 문안(in accordance with article 10)를 추가하자는 견해(대안^②)가 있었으나, 작업반은 초안 제9조는 기능적 등가성에 관한 여러 조문들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는 대안^①에

12) Article 9. Identification of a person using IdM

Subject to article 2, paragraph 3, where the law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for a particular purpose],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identificat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IdM services if a method is used for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for that purpose].

더하여 초안 제9조와 관련이 있는 초안 제10조 제1항 (b)호에 ‘reliable’를 추가하자는 의견¹³⁾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같은 조는 신원 관리 서비스의 법적 효력 인정을 위한 안전조항(safety clause)으로서 신뢰성(reliable)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 ‘deemed’ 나 ‘if’ 등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초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7. 제10조 신원관리 서비스의 신뢰성 요건

사무국은 초안의 상당수 조항에서 IdM service라고 표현하는 반면 초안 제10조와 초안 제11조에서는 IdM system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어느 한 표현으로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대표단은 초안 제10조와 제11조가 ‘IdM service’의 신뢰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IdM service’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작업반은 초안 제10조와 초안 제11조의 명칭을 ‘IdM serv-

ice’로 통일하였다.

신뢰성 판단의 기준을 규정한 초안 제10조 제2항과 관련하여, 같은 항 (b)호의 “level of assurance framework”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해설서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trust framework”라는 광의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국내적으로 정의될 개념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작업반은 같은 항의 “level of assurance framework”는 유지하되, “levels of assurance or similar frameworks providing guidelines to designate the degree of confidence in IdM systems”는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8. 제11조 신뢰할 수 있는 신원관리 서비스의 지정

신뢰할 수 있는 신원관리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발행할 것을 규정한 초안 제11조 제2항 (b)호¹⁴⁾에 관하

13) Article 10. Reliability requirements for IdM [services][systems]

1. For the purposes of article 9, the method shall be:

(b) **deemed to be reliable if the method has been**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 described in article 9.

14) Article 11. Designation of reliable IdM systems [services]

2. The [person, organ or authority, whether public or private, specified by the enacting jurisdiction as competent] shall:

(b) **Publish a list of designated IdM** systems [services], including details of the IdM service provider[, or

여 해당 목록이 가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목록 작성과 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방법으

로 대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호의 “or otherwise inform the public”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9. 제12조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변경 전 초안 제12조	변경 후 제12조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due to a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instrument].	1.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loss caused <u>to the subscriber or to the relying party</u> due to a failure to comply with its <u>obligations under articles 6 and 7</u> .
2.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rules on liability under the law and is without prejudice to: (a) any other basis of liability under the law, including liabili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ntractual obligations; or (b) any other legal consequences under [this instrument] of a failure of the IdM service provider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instrument].	2.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rules on liability under the law and is without prejudice to: (a) any other basis of liability under the law, including liabili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ntractual obligations; or (b) any other legal consequences of a failure of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u>this Law</u> .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subscriber for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an IdM system to the extent that: (a) 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IdM system may be used; [(b) Those limitations are agreed between the IdM service provider and the subscriber;]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a subscriber for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an <u>identity management service</u> to the extent that: (a) 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u>identity management service is</u> used; and (b) Those limitations are <u>contained in the arrangement</u> between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and the subscriber.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subscriber for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an IdM system to the extent that: (c) The IdM service provider has notified [informed] the subscriber of those limi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4. [신설]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u>to a relying party</u> for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an identity management service to the extent that: (a) <u>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 for which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is used; and</u> (b) <u>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has complied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6, subparagraph (e) with respect to that transaction.</u>

otherwise inform the public]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제한’을 다룬 초안 제12조는 초안의 핵심 조항으로서 많은 논의와 변화가 있었다. 같은 조의 목적은 계약의 존재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자가 초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서비스 공급의 성격(public or private)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이번 제62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i) 책임의 상대방으로 가입자와 신뢰당사자를 구분하고, (i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초안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책임의 상대방을 가입자(subscriber) 또는 신뢰 당사자(relying party)로 구체화했고, 초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은 초안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신뢰 당사자에 대한 책임 제한은 같은 조 제4항으로 분리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사이에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을 시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된다는 초안 제12조 제3항 (b)호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의미하는 용어(‘agree’)에 대해 가입자의 서비스 사용이 법 규정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의견에 따라 “arrangement”로 수정하였다. 또한, 그러한 합의가 가입자뿐만 아니라 신뢰 당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므로 동 호에 신뢰 당사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신뢰 당사자에 대한 책임 제한을 새롭게 규정한 같은 조 제4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초안 제12조 제4항 (b)호와 관련하여 신뢰 당사자에 대한 책임의 한도가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책임 제한의 정도와 유사하도록 수정(‘subscriber concerned’)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초안 제6조 (e)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변경 전 초안 제6조 (e)항	제6조 (e)항
(e) Provide and make publicly available means by which a subscriber may notify the IdM service provider of a security breach pursuant to article 8.	(e) Provide easi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where relevant: (i) Any limitation on the purpose or value for which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may be used; and (ii) Any limitation on the scope or extent of liability stipulated by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한편,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 초안 제6조 (e)항과 같은 조 (d)항¹⁵⁾이 유사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째로, 같은 조 (e)항의 ‘신뢰 당사자(relying party)’와 같은 조 (d)항의 ‘제3자(third party)’ 양자를 구분해야 되는지 관하여 ‘제3자’를 ‘신뢰당사자’로 통일하자는 견해, ‘제3자’를 그대로 두고, ‘신뢰당사자’를 추가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로, 같은 조 (e)항의 ‘easily’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easily’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조 (e)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힘들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10. 제14조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초안 제14조 제1항¹⁶⁾에도 초안 제6조 (a)

항의 “신뢰서비스의 목적과 설계(purpose and design of the trust service)”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규범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초안 제14조 제1항 (a)호에서 “기능(functions)”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최소한(at a minimum)”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c)호의 “in accordance with law”는 (c)호 뿐만 아니라 같은 항의 (a)호 및 (b)호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c)호에서 삭제하고, 같은 항 본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11. 제15조¹⁷⁾ 가입자의 의무

본조 (a)항 중 “subscriber’s credentials”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IdM 서비스의 맥락에서 “identity credentials”라는 표현을 사용

15) Article 6. Obligations of IdM service providers

An IdM service provider shall[, at a minimum]:

- (d) Make its operational rules, policies and practices **easily** accessible to subscribers and **third parties**

16) Article 14. Obligations of trust service providers

- 1. A trust service provider shall, at a minimum:

- (a) Have in place operational rules, policies and practices, including a plan to ensure continuity in case of termination of activity, as appropriate to the purpose and design of the trust service;

17) Article 15. Obligations of subscribers

The subscriber shall notify the trust service provider, by utilizing means made available by the trust service provider pursuant to article 14, paragraph 1 or by otherwise using reasonable means, if:

- (a) The subscriber knows that **data or means used by the subscriber for access and usage of** the trust service has been compromised; or
- (b) The circumstances known to the subscriber give rise to a substantial risk that the trust service may have been compromised.

하고 있고, 신뢰서비스의 맥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반은 같은 항 문안 중 “the trust service” 앞부분에 “the data or means used by the subscriber for access and usage of”를 추가하였다.

12. 제16조¹⁸⁾ 전자 서명

본조와 관련하여 전자서명은 신분(identity)을 나타내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신분은 아니므로 초안 제16조 (a)항의 “identify”의 의미가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identify”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에서 확립된 개념이라는 사무국의 설명을 고려하여 현안대로 유지되었다.

13. 제17조¹⁹⁾ 전자 봉인

본조 (b)호에 “and date”를 유지할지에 관하여, “time”이라는 개념에는 “date”도 포

함되어 있으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초안 전반에서 “time and date”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4. 제22조 신뢰서비스의 신뢰성 요건

본조 제1항 (a)호의 “목적(purpose)”란 용어와 통일성을 위해 본조 제2항 (h)호의 “기능(function)”은 “목적(purpose)”로 수정되었고, 초안 제22조 제2항 (c)호로 ‘Any relevant level of reliability of the method used’가 추가되었다.

15. 제25조 국경간 상호인증

본조 제1항 중 국경간 상호인증 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신뢰성의 인정 요건을 극복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동등(a substantially equivalent)’과 ‘최소한 동등(at least an equivalent)’ 중 무엇으로 할

18) Article 16. Electronic signatures

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 method is used:

- (a) To **identify** the person; and
- (b) To indicate the person’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19) Article 17. Electronic seals

Where the law requires a legal person to affix a seal,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eal,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 method is used:

- (a) To provide reliable assurance of the origin of the data message; and
- (b) To detect any alteration to the data message after **the time and date** of affixation,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endorsement and any change that arises in the normal course of communication, storage and display.

지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졌다.

판단 재량의 여지를 두기 위해 전자를 선호하는 국가도 있었으나, 전자는 모델법 이외에 별도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수가 후자를 지지하여 후자가 채택되었다. 또한, 신원관리 서비스와 신뢰서비스를 구별하여 신뢰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상호인증을 초안 제26조²⁰⁾로 분리하였다.

16. 제22조와 제25조의 관계

초안 제22조 제3항²¹⁾은 신뢰서비스의 신뢰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리적 요건 (geographic location)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초안 제25조의 국경간 상호인증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초안 제25조 제1항을 “meet the standard for reliability in article 22”로 수정하여 제22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초안 제25조가 규범의 핵심에 해당하는 조항임을 이유로 수정에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여서 원안이 유지되었다.

또한, 국경간 상호인증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안 제22조 제2항에 “any relevant level of reliability of the method used”를 삽입하자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 같은 항 (c)호가 추가되었다.

추가로 일부 국가들은 초안 제25조에 ‘with respect to article 22’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경간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문안에서 가정법(if)을

20) Article 26. Cross-border recognition of the result of the use of trust services

1. The result deriving from the use of a trust service provided outside [the enacting jurisdiction]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as the result deriving from the use of a trust service provided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if the method used by the trust service offers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2. In determining whether a trust service offers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regard shall be had to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trust service shall be presumed to offer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if [the person, organ or authority specified by the enacting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23] has determined that equivalence, taking into account article 22, paragraph 2.

21) Article 22. Reliability requirements for trust services

3. In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the method, no regard shall be had:
 - (a) To the geographic location where the trust service is provided; or
 - (b) To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trust service provider.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초안 규정상 ‘최소한으로 동등한 신뢰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수범자인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가 관할의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가정법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II. 평가 및 시사점

「국경간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범안」은 제63차 작업반 회의(2022.4.4. ~ 4.8.)를 끝으로 제55차 본회의(Commission)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초안에 대한 논의는 2019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고 초안 내 각 조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63차 회의에서는 조항 간 표현의 통일, 해석의 명확성 등 전체 조항을 검토하는 마지막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안은 EU 회원국이 제시한 모델을 기초로 하여 계약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을 절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관련 법령(전자서명법 등)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다만, 초안이 모델 법으로 성안되어 국내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 제63차 작업반 회의에서

는 국내 수용시 상충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63차 회의에서 다음 주제로 ‘계약에서의 AI를 활용한 자동화(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 contracting)’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차기 주제의 논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 대상을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자동화(automation)로 한정하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논의 주제에서 제외되었다. 스마트 계약은 분산원장 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에서 논의되는 것으로서 AI를 이용한 자동화 계약 담론에 포함시키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둘째,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AI와 관련된 논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AI(AI in trade)의 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뤘었는데, 실무작업반은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를 위한 AI(AI to trade), 즉 AI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논의에 집중한다.

한편, 구체적인 조항(provision)으로 ① AI를 이용한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legal recognition)받기 위한 요건 및 계약의 효과

에 관한 귀속(attribution), ② 계약의 성립 전 관련 정보(precontractual information)의 공개, 계약의 이행 등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 of actions), ③ 채무불이행 발생시 책임의 귀속 주체, 배상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위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수용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일부

조항²²⁾을 두고 있으나, 동 법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초점을 맞춰 제정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관련 국내 논의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향후 실무작업반 논의는 국내법 정비에 참고가 될 만한 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행 국제 UNCITRAL 규범²³⁾, 각국의 입법례²⁴⁾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송신된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 원칙을 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제13조 및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교신 수단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 제12조(자동 메시지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된 계약에 대한 유효성 인정) 등.

24)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S.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전자 에이전트(electronic agent)’ 정의 규정(제2조 제6항), 전자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 성립 요건 관련 조항(제14조 제1항) 등.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임 세 영

I. 회의 개요 및 결과 요지

'21. 12. 13.부터 17. 까지 열린 이번 제 59차 실무작업반 회의 역시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간이도산절차에 대한 잔여 논의가 모두 마무리되어 「소규모 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이 완성되었다. 이어 2개의 신규 의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사무국은 각 의제의 논의 목적, 논의 범위, 완성될 문서의 형식 및 주요 쟁점 등 대략적인 작업의 틀을 정리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각 대표단들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II. 주요 논의사항

1. 「소규모 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 완성

2018년 12월 제54차 실무작업반 회의부터 본격 시작된 간이도산절차에 대한 논의가 「소규모 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 이하 ‘입법지침’)」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입법지침은 크게 권고(Recommendation, 107개 조항)와 이에 대한 주석(Commentary, 420개 문단) 부분으로 나뉜다. 지난 2021년 제54차 본회의에서 권고(안)이 채택·확정되고 주석(안)에 대한 일부 수정 및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제5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주석(안)에 대한 잔여 논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입법지침 전체가 완성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주식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문구 정비 수준의 수정에 그쳤다.

논의는 주로 주식 303번 문단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간주를 다루고 있는 권고 76조에 관한 것이다. 이 주식에 대해 미국과 세계은행(World Bank) 측은 지난 제54차 본회의에서 △ 채권자 보호장치(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표결절차 등)와 의제승인제도의 병존 가능성 강조 및 △ 관련 World Bank 규범(World Bank Principles for Effective Insolvency and Creditor/Debtor Regime, 2021)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미국과 세계은행은 국가들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적 배경을 고려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채권자 보호라는 가치들 간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재정비한 후 이번 회의에 다시 제출하였다. 영국 대표단도 이러한 수정문안의 일부를 정비하여 제시하는 등 미국·세계은행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대표단들 역시 수정문안이 다양한 정책적 고려들 속의 적절한 균형점을 입법 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하여 지지를 표하였다. 이로써 주식 303번 문단은 미국·영국·세계은행측 제안과 같이 확정되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측이 이 수정 문안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진단하였으며 오히려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완성된 입법지침은 기존의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의 일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UNCITRAL MSMEs 시리즈 중 하나로서 배포될 예정이다.

2. ‘도산절차에서의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에 대한 논의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의 제2의제인 ‘도산절차에서의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콜로키움 결과를 토대로 지난 제54차 본회의에서 제5실무작업반 신규 의제로 채택되었다.

사무국은 △ 기존 도산 관련 UNCITRAL 규범 내의 도산재단의 보호 및 보전 조치¹⁾, △ 도산절차상 이용 가능한 민사적 자산 추적·회복 수단²⁾ 등을 정리하여 회의

1) 우선 도산절차 개시 전 조치와 도산절차 개시 후 조치를 구분하고, ① 자산의 추적 및 회복에 관한 도산대표자의 권한, ② 부인(avoidance), ③ 이사·주주·그 밖의 자에 대한 책임 추급, ④ 재무 및 영업 관련 정보 제공 등 채무자의 의무, ⑤ 법원 간, 법원과 도산대표자 간 및 도산대표자 간의 공조 및 조정 등을 설명함
2) 사무국은 추적수단(예: 정보개시명령 등), 회복수단(예: 가처분, 가압류 등) 및 보조수단(예: 정보공개금지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무국이 작성할 규범의 범위 및 형식에 대해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논의 초기인 만큼 주로 사항에 대해 각 대표단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각 주요 사항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논의 목적 및 작업의 성격

이 의제에 대한 논의는 도산재단에 속한 자산 가치의 최대화 및 채권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도산절차에서의 자산 추적 및 회복에 관한 제도 및 경험의 공유, 다양한 법제들의 간극 축소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단 간 이견이 없었으나 ‘실무가, 정책입안자 및 입법자에 대한 제언 제공’까지 그 목적으로 포섭할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다.

실무작업반의 최종 결과물이 실무지침 또는 입법지침의 형태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존재할 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의 대표단들은 - 결과물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 민사적 재산 추적 및 회복에 관한 다양한 입법·정책적 접근을 통일하고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문서(모델법이나 협약 등)의 마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복합조사기법(toolbox approach)’ 사용을 제안하는 대표단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복합조사기법은 도산법에 관한 기존 UNCITRAL 문서 내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포섭할 수 있고, 나아가 보통법계와 대륙법계의 법적 수단들을 골고루 소개함으로써 서로 다른 법제 간 균형점 달성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최종 결과물에서 다루어질 법적 수단들은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예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논의 과정에서 국가 주권과 자산 추적 및 회복 절차의 목적 간에 적절할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많은 대표단들이 작업 결과물의 형식을 현시점에서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며, 향후 실질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 논의함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논의 범위

제2의제에 관한 논의는 도산절차 및 민사절차에 한정됨이 원칙이다. 일부 대표단 역시 형사법 등 다른 규범 영역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작업이므로 이번 작업은 형사절차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도산 및 민사절차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명령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형사법 영역과의 접점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도 다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산의 추적 및 회복이 통상 국내 절차 뿐만 아니라 초국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국제 공조, 국제적 승인 및 집행 문제 역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의제들의 상호 연관성, 작업의 중복 및 결과물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해 사법 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와 같은 유관 국제기구 및 다른 UNCITRAL 실무작업반과의 동향 공유 및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UNIDROIT는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일반적인 수준의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밝히며 후속 논의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최종 문서에 포함될 요소 관련

사무국이 작성할 회의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절차에서의 자산의 추적 및 회복과 관련된 기존 UNCITRAL 규범으로부터 보전처분,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확정, 자산의 추적, 자산의 회복 및 보조적 수단에 관한 규정들을 추린

후 각 항목 별로 정리한 내용

-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에서 이용되는 법적 수단의 예시적인 목록(도산대표자가 외국에서 부수적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포함)
- 보전관리인의 선임을 비롯한 보전처분의 중요성, 그 남용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 보전처분과 관련한 국제공조 제도의 필요성
- 보전처분과 같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경우, 효과적인 제재 수단 및 제재의 역외적 효력 등

아울러 사무국은 각국 도산절차 상 자산의 추적 및 회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들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들로부터 취합하여 정리한 후 실무작업반에 제공할 예정이다.

3. ‘도산절차의 준거법’에 대한 논의

제3의제인 ‘도산절차의 준거법’은 EU 대표단이 제51차(2018년) 및 제52차(2019년) 본회의에서 제안하였다. EU 대표단은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의 기존 작업 결과물들이 준거법에 대해 다루지 않았으며 이를 각국 국내법제에만 맡겨두는 것은 국제도산사건에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제52차 본회의에서는 위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 일반뿐만 아니라 계약법·회사법·증권법·은행법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의 준거법 선택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논의의 범위 및 성질에 관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에 2020년 12월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을 주제로 콜로키움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제54차 본회의에서 제5실무작업반의 신규 의제로 최종 채택되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논의 순서와 방법, △주요 논점 및 △이번 회기 논의 필요 사항 등을 정리하여 회의 자료로 제공하였다. 특히 그동안 제5실무작업반에서 도산절차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의 권고 30~34조 및 이에 대한 주석을 원문 그대로 발췌하고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단들 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논의 목적

제3의제는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을 통일하고 도산법정지법(=도산절차개시국법)

의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도산절차의 복잡성과 소요 비용을 줄이는 것을 그 논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포럼 쇼핑 등을 방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도산절차에서 준거법을 선택 및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다.

(2) 문서 형식

향후 완성될 작업결과물(문서)의 형태에 관하여는 △기존의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을 수정·보완(일종의 개정 작업)하자는 의견과 △별도의 문서(모델법이나 입법지침 등)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었다.

문서의 형식은 앞으로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계속 검토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3) 논의 진행 순서 및 방법

사무국은 일종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우선 △ 기존의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내용(권고 30~34 및 관련 주석)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 단일 채무자의 도산절차를 전제로 도산법정지법 및 그 예외에 대해 검토한 후, △ (복수 당사자가 관련된) 국제 병행도산 및 기업

집단 도산에서 발생하는 준거법의 선택 및 기타 관련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다수 대표단이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지지하였다.

(4) 주요 쟁점별 논의 내용

● 쟁점 ① :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권고 30의 논점들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기술이 필요한지 여부

권고 30(도산절차 개시 당시 권리 및 채권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할 법은 도산법정지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은 현재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과 권고 30을 보완하여(예컨대, 물건, 법정지의 선택, 이사의 의무 등의 보완 등)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 쟁점 ② 및 ③ :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권고 31(도산법정지법의 적용 대상)의 목록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는지 여부

우선 ‘도산법(insolvency law)’은 도산 관련 법(도산절차 밖에서의 채무조정에 관한 법 포함)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포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도산절차(insolvency proceeding)’의 개념도 보전절차나 법정 밖에서의 채무조정절차가

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도산법정지법의 적용 대상 목록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새로운 항목들로는,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 상계 관련 적용 대상의 한정, 담보권(그 밖의 물건 포함)에 관한 담보물(또는 목적물) 소재지법의 적용 가능성, 이사의 의무와 책임, 채무조정(또는 채무조정법) 등이 제시되었다.

● 논점 ④ 및 ⑤ : 도산법정지법 적용의 예외 사항들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오늘날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 수준을 반영하여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권고 32의 내용(지급제도, 결제제도 및 금융시장 참가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배제함)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근로 관련 계약의 이행거절, 계속 및 변경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33의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내용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반드시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권고 34의 내용(권고 32 및 33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산법정지법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도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을 권고)에 관하여는, 현재 내용대로 도산법정지법의 적용 예외는 제한적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³⁾ 이에 달리 예외 인정 요건들을 추가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정지법의 적용 및 그 예외는 준거법의 결정의 통일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쟁점이므로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논점 ⑥ : 회생절차에서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원칙이 파산절차와는 달리 처리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 입법지침의 주석 부분에서 파산절차와 대비하여 회생절차에서의 준거법 선택에 관하여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논점들을 언급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논점 ⑦ : 현재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권고 30~34)은 외국법의 적용을 불허하는 ‘공서양속 예외(public policy exception)’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현행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을 보완할 경우 ‘공서양속 예외’를 굳이 직접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및 별도의 모델법을 성안할 경우에는 ‘공서양속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단은 공서양속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 **논점 ⑧ :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지 여부**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권고 30에 의하면 도산절차의 개시 당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의 효력에 대하여 적용될 법은 도산법정지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을 권고 31에 따른 도산법정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다수 대표단이 입장을 같이 하였다. 오히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 확정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도산재단의 일부로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실제의 필요성 및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 선택을 보다 단순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III. 평가 및 시사점

우선 새롭게 성안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과 관련하여, 국내 법제와의 조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된 나머지 두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서 그 논의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제2의제(민사적 재산 추적 및 회복)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잠정조치(보전조치) 관련 법제 및 실무를 적극 소개하여 향후 작성될 문서가 (비록 예시적 성격을 가지더라도) 가급적 우리나라 법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의 추적 및 회복은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가상 화폐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UNCITRAL에서도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금융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및 실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다음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3의제인 준거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간 입장 차이가 큰 영역이므로 향후 논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법이론 및 실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제5실무작업반의 기존 논의가 도산절차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면, 신규 의제는 절차 개시 전 그 절차의 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준거법 결정), 그리고 도산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가 (특히 채권자에게) 충분히 실효성 있는 것인지(자산의 추적 및 회복)에 관한 것이다. 의제의 특성상 도산절차를 보다 높은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다른 법령(금융법, 전자상거래법 등)과의 연계 쟁점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시각을 토대로 다음 회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끝.

「통상법률」 연구윤리규정

2009. 6. 30 제정

제1장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게재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상법률」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저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 등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저자(역자)(단독연구의 경우)나 저자(역자)의 순서(공동연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 서문, 상의 등에서 감사를 적절하게 표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투고 및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본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와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통지 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3조(서약)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각각 (별지2)와 (별지3)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결과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통상법률」 제00호)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저자(들)은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통상법률」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은 본 논문이 「통상법률」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통상법률」에 위임합니다.

20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이메일(연락처)	위임여부(O,X)	서 명
제 1 저 자					
교 신 저 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별지2)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편집위원용)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편집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함
2.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
4. 투고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함

20 년 월 일

편집위원 ○ ○ ○ ㉠

(별지3)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심사위원용) (2009. 6. 30. 신설)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심사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2. 심사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사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함
4. 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5. 심사논문의 중복투고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6.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함, 부정인용 및 참조를 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통상법률」 원고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03년 1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사대상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률」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률」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통상법률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해당분야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해당분야의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법률」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획논단 주제 선정
 3.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에 따른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제8조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교체
 6. 제11조 제4항에 따른 원고 게재 여부의 결정
 7. 기타 「통상법률」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자문위원으로서의 임기는 편집위원 임기 만료시 함께 종료된다.
- ② 편집위원이 임기의 개시에 앞서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임기 중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 ④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임무)

-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원고의 심사

- 제9조(심사 대상) ①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통상법률」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통상법률」誌의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통상법률」 원고작성방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통상법률」誌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심사결과서 양식,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양식을 송부한다.

②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제9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행하되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심사 기간은 1주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의뢰 후 3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심사위원을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 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원본 파일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법무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능한 때: 게재 불가
- ② 심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유보’ 의견을 내거나, 1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게재 불가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원고의 게재 등

제17조(원고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원고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률」誌의 내용은 법무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률」誌는 매년 2, 5, 8, 11월 2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자료의 전송)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를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 즉시 투고자에게 자료 전송 및 제공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하며 7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3년 1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현재 재직 중인 편집위원들은 재위촉되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통상법률」 원고 작성 방법

제1조(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 작성 요령) ① 원고는 연구논문, 사례연구, 연구자료, 해외동향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원고지 150매 내외 (A4 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제목 모두 표기), 필자의 성명(괄호 안에 영문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인적사항,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는 주 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⑥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 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3. 각 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⑦ 목차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⑨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면수, 출판연도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면수, 간행연월

3. 판례 : 대법원 1900. 00. 00. 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1900년, 000면) 또는
대판 1900. 00. 00, 00다0000
 4.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단, 일본 판결의 경우 선고 일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쓸 경우 괄호 안에
서기를 표시한다.
 5. 영문성명, 논문명, 서명 등은 각 단어의 첫 자 외에는 반드시 소문자로 표기
한다.
 - ⑩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표기하고,
로마자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p.’와 같은 표시를
생략하고 숫자만을 표기하며,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을 사용한다.
 - ⑪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예 :
가석방제도(parole system)]
 - ⑫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한다.
 1. 저자명, 서명, 출판관련사항은 각 쉽표.로 구분한다.
 2. 출판관련사항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서양인 저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성을 먼저 쓰고, 공저의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저자만 성을 먼저 쓴다.
 4. 동일 저자가 작성한 문헌이 복수인 경우, 문헌이 출판된 연도순에 의하여 나
열한다.
 - ⑬ 원고 뒷부분에 국문 및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words, 국문 및 영문)를 10개
내외로 기재한다.
 - ⑭ 기타 논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
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 제4조(원고의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 간사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주소로 송부하거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편집위원장]

박정현 (국제법무과장)

[편집위원]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준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인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률담당관)

조성준 (일리노이공과대 시카고 켄트로스쿨 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 간 지 통 상 법 률

2022년 2월 28일 발행(통권 제154호)

1994년 5월 20일 등록(97-10-5-11)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225-07

ISSN : 1598-4915

eISSN : 2765-5962

발행인 : 법무부장관 박 범 계

편집인 : 법 무 실 장 이 상 갑

발행처 : 법무부 / 편집실 : 국제법무과 / 전화 : 02-2110-3664 / FAX : 02-2110-0327

주 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4호

인 쇄 : 성 진 사 : 031-388-4485

[비매품]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54

February 28, 2022

Publisher Park, Beom-Kye / Minister of Justice

Editor Lee, Sang-Gap / Deputy Minister for Legal Affairs

Edited in

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Published quarterly by

Ministry of Justice

※ “통상법률”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